

研究報告書 95-17

# 警察社會事業家制度 도입 · 활용방안

연구 : 최원규(전북대학교수)

본 연구보고서는 치안정책용역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최종보고서로서, 게재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목 차

### 〈연구내용 요약 및 시범사업 개요〉

I. 서론 .....	25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	25
2. 연구방법 및 내용 .....	27
II. 이론적 배경 .....	27
1. 경찰사회사업의 개념 및 발전 과정 .....	29
2. 경찰사회사업의 유형들 .....	36
3. 사회사업 전문직의 특성과 역할 .....	55
III. 경찰사회사업의 대상문제 : 가정폭력 .....	64
1. 가정폭력의 개념 .....	64
2.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 .....	76
IV.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의 실제 .....	87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반응의 변화 .....	87
2.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의 반응 .....	98
V.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102
1. 경찰사회사업의 위상 .....	104
2. 법적 체계 .....	106
3.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	107
4. 시범사업 계획 .....	108
VI. 결론 .....	113
참고문헌 .....	115

## 표 목 차

〈표 1〉 SSP와 FTC의 비교 분석 .....	55
〈표 2〉 부부문제 상담 원인 .....	76
〈표 3〉 전주 여성의 전화 상담내용 .....	77
〈표 4〉 우리나라 가정폭력 관련 언명들 .....	86
〈표 5〉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인력 교육 .....	109

## 그림 목 차

〈그림 1〉 SSP의 사법체계에 관한 순서도 .....	38
〈그림 2〉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조직구조 .....	108
〈그림 3〉 경찰서 가정문제 상담소와 연락조정하는 지역사회 자원 .....	111

## 〈연구내용 요약 및 시범사업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산업화,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학대,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등의 가정폭력과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요즘 ‘부모에게 맞아 죽은 아이’ 사례나, 며느리, 자식에게 맞아 죽은 노인,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일, 학대 받아온 자녀가 부모를 죽인 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증가추세는 이 시대의 경찰에게 ‘가정문제는 남이 간섭해서는 안될 문제이다’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사후 뒤처리에 머물고마는 경찰의 개입보다는 초기 진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찰의 역할을 원하고있는 것이다.

경찰들은 대개 가정폭력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유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만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체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는 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 때에는 그들을 중재, 타협, 교육시키며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곳, 예를 들면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피난처 등에 대피시킨다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한다. 경찰이 이러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사업가와 합동작업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는 보다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경찰 또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고서 다른 일들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봉사경찰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사회사업가가 협동작업을 하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가 시작된 배경과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우를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1. 경찰과 사회사업사이의 협동 작업

경찰사회사업제도가 발전한 미국의 경우에도 경찰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정문제에 대해 ‘무개입의 개입’의 원칙을 가지고서 최소한의 접촉만을 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문제가 점차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가정문제에 대한 경찰의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찰은 가정문제신고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사업가와 협동을 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 경찰과 사회사업이라는 두 전문직은 교류의 부족, 편견,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적대감으로 인해 상호불신의 관계에 있었으나 각 전문직의 노력으로 이 불신은 해소되고 협조, 신뢰의 관계로 발전되었다.

경찰이 경찰사회사업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사회사업가는 사건을 의뢰받아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찰은 자신이 의뢰한 클라이언트(원조대상자: client)가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그의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다. 사회사업가에게는 ‘비밀보장’이라는 실전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조대상자(client)와 첫번째 면접에서 그가 ‘범법 행위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게 알려질 것이다’라는 동의를 받고 경찰에게는 심리 사회적인 측면과 같은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그의 태도나 그에게 이로운 서비스 등만을 알려 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경찰과 사회사업가는 의사소통, 환류(feedback)을 하며 관계가 개선되었다.

경찰사회사업제도는 24시간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는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경찰의 의뢰가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바로 현장으로 나가 위기상황을 해결해 주고 추후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경찰사회사업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경찰은 사회적 문제나 위기상황,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얻게 되었고, 사회사업가는 새로운 인구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는 이 서비스의 향상으로 더욱 안전하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는 많은 원조대상자(client)들에게 경찰

의 권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또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을 소년법원이나 법원으로 보내기보다는 사회적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였는데, 이 경우에 재범률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 2. 경찰사회사업의 사례

### 가. 미국의 사회서비스 계획 (SSP)

1970년 미국 Chicago근처의 도시 Wheaton, Niles에서 처음으로 경찰사회사업 계획이 실시되었다. 사회사업가를 경찰서 내에 배치하여, 경찰로부터 원조대상자(client)를 의뢰받아 사회적인 평가, 24시간 위기 개입, 계속적인 치료, 추후관리와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요점은 경찰과 사회사업가가 가능한한 빨리 접촉하여 원조대상자(client)에게 초기에 개입함으로써 가족, 업무가 많은 경찰과 지역사회에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범인을 체포하면 경찰은 그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이에따라 SSP로 의뢰하거나 법원이나 소년 법원으로 보낸다. 소년 법원이나 법원에서는 다시 SSP로 의뢰하거나 형을 집행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SSP는 주로 형집행 전에 의뢰를 받으며 초기 개입에 중점을 둔다.

경찰은 전문적인 판단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의뢰하는데, 주로 문제 확인, 범죄에 대한 원조대상자(client)의 태도, 경찰사회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원조대상자(client)의 의지가 기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동안 계속 실행되었으며 약 1,000명의 원조대상자(client)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경찰, 사회사업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가시적인 관계들로 이 작업의 가능성과 유용성은 증명되어 지금은 지역 사회의 예산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 나. 가정문제상담소 (FTC)

이 프로그램은 Detroit & Wayne County의 가족서비스 기관과 경찰청간의 협동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가정폭력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긴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명확해진 지역사회의 욕구와 경찰과 사회사업 전문직이 가정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가정폭력이 단순한 시민의 문제가 아닌 범죄로 인식되고 가정폭력을 다루는 경찰의 권한이 증대됨으로써 그리고 가정폭력 클라이언트와 가정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사업가들이 증가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었다.

‘의뢰되는 즉시 이용 가능하다’는 운영 원리에 입각하여 가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화 상담서비스나 접근 서비스(outreach service)도 이루어졌다.

### 3. 사회사업 전문직의 특성과 역할

사회사업은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1972년 전미사회사업가연합회(NASW)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사업이란,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를 원조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 발휘 능력을 증진 또는 유지시키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전문사회사업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인 보호 서비스를 계획, 설정, 유지, 평가하며 상담을 제공한다.
- 2) 사회문제를 실질적이거나 물질적 그리고 감정적인 요인으로 파악한다.
- 3) 사회보호계획과 상담을 수행한다.
- 4)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킨다.
- 5) 사회보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의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관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6) 자원봉사자와 자발적인 기관들과 함께 사회보호 서비스를 계획한다.
- 7) 사회보호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존하는 욕구와 미래에 있을 욕구의 해결 방안도 포함시킨다.

8) 사회사업 관리자는 사회사업가가 예방적일 뿐 아니라 반응적인 관점에서 사회계획을 하도록 한다.

9) 사회사업 교육은 사회보호 계획과 상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0) 자원의 분배도 사회사업가의 임무 중의 하나이다.

#### 4.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은 인종, 민족, 종족, 수입,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으며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가장 위험스러운 장소로 변해버렸다. 성인 여성은 다른곳, 다른 사람에게 보다 자기 남편의 손에 의해 자기 집에서 구타, 살인,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흔히 때리고, 밀치고, 차고, 찌르는 등의 신체적인 학대뿐 아니라 성적 또는 심리학적인 학대의 성격도 띠고 있다.

가정폭력은 널리 퍼져 있으며 치명적이고 복잡하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붕괴시킨다. 학대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 손실은 그의 삶 자체이다. 그는 알콜남용, 의기소침, 자살과 자살미수, 분노, 정신병리학적 장애, 유산, 건강문제와 무력감을 갖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입는 상처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다. 어머니가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란 대부분의 어린이는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알고 또 이를 증거한다. 즉각적인 손실은 안정감의 상실이다. 아이들의 행동이 역행적일 수 있으며 물체나 동물, 형제,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아내나 아이를 학대, 구타할 가능성이 많다. 폭력을 사용한 남자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감, 분노, 자신감의 상실, 정력과 자제력의 상실을 많이 경험한다. 또 죄책감, 수치심, 치욕과 공포를 느끼며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인과 자녀를 잃고, 직업, 생명, 자유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개인처럼 사회도 집단 안정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들은 분노와 긴장을 느끼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숨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학대, 아동 학대, 노인 학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우자 학대의 가해자들은 스스로 불안, 위협, 낮은 자아감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를 떠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계속적으로 애정을 요구하며 극도의 급박, 불안, 강박적이고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 폭력, 애정과 선물의 과도함, 고립, 위기와 혼란의 상황이 됨으로써 생존자 즉 살아남은 피해자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느끼고 알게 된다. ‘폭력의 과도함’이라는 특징은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된다. 친절을 보이려 하거나 애정을 보일 때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해진다. 폭력은 학습된 행동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은 학대자가 되기 쉬우며, 또한 어렸을 때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 학대자가 될 가능성은 더 높다. 게다가 폭력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세대적인 폭력전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 5.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

경찰은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게 첫번째로 반응하는 기관이다. 경찰이 초기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교정 제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가정문제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3단계를 거쳐 변해 왔는데, 제1단계(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전통적 반응단계이고, 제2단계(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봉사단계이며, 제3단계(1980년대)는 체포단계이다.

### 가. 전통적 반응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가정폭력이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었다. 이 시기에 경찰들은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무개입주의’의 반응을 보여왔다. 가정문제 신고전화에의 경찰의 반응은 상황을 ‘진정(cool)’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면서 미국 가정의 어두운 측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되자,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들이 가정폭력상황을 적절하게 수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체포하라'는 내용 이상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받았다. 또한 경찰이 '법률 집행자(law enforcers)'로서 반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치안유지자'로서 개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경찰 역할에 대한 모호성에 대하여도 비판을 받았다. 197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 분쟁은 경찰사망과 부상에 있어서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의 안전조치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이 더욱더 가정문제에 대한 무개입 철학을 강화시켰다.

#### 나. 서비스 관점

1970년대에 구타당하는 아내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과 사회운동가들은 가족 갈등시 경찰의 책임성을 요구하였다. 경찰서에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게되자, 경찰 조직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을 훈련시키는 시설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였다. 훈련받은 경찰들은 폭력적인 가정문제 상황에서 중재하는(mediating) 실천가(practitioner)로서 활동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실천가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은 가정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개입기술과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접근은 1970년대에 태동하여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훈련 프로그램의 형태에 관계없이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의 역동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있었는데, 경찰관들로부터 매맞는 아내들의 고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들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쇠퇴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들이 빈약한데 있었으며, 또한 매맞는 아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비판도 한 몫을 하였다. Wermuth도 이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가정내 폭력을 형사상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문제로 가정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가정문제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여타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체포 관점

사회운동가들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자행되었을 때에 체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개발함으로써 가정폭력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찰의 재량을 감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에 두 종류의 체포정책이 발전되었는데, 하나는 어떤 기준에 맞으면 가해자가 체포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권장체포정책(preferred arrest polici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 기준이 맞으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무체포정책(mandatory arrest policies)이다. 두 정책의 차이점은 허용된 재량권의 정도이다. 1988년까지 10개의 주에서 가정폭력상황에 반응하는 경찰관들의 지침으로 의무체포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이 통과된 후 6개월간 시애틀에서는 체포건수가 520%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1980년대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남성들이 가정폭력범죄로 처벌 받았다."

체포정책이 아내 학대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배우자 학대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사회 전반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라. 1990년대의 경찰의 반응

1990년대의 경찰의 반응은 위 두 가지 관점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가정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경찰의 개입을 바라고 있다. 체포와 서비스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경찰의 반응을 개선하였다. 1990년의 가장 고무적인 전략은 경찰과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연락조정노력이다.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함으로써 1990년대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로서 우리사회의 성격과 구조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 마. 우리나라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고, 또 가정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요청의 횡수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무개입의 개입’의 원칙하에서 가정문제에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반응은 매우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를 상기에서 설명한 미국의 발전 과정에 적용해 본다면 제 1단계 전통적인 반응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변화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이에대한 해결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경찰사회사업 제도의 도입이 이 문제의 해결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개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에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도입·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 가정폭력과 청소년 비행, 그리고 이웃간 분쟁 등과 같은 비교적 부드러운(soft) 사건들에 대해 경찰조직 내에 전문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각종 ‘패륜범죄’와 여성에 대한 학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도입필요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할지라

도 제도운영의 토대와 환경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21세기 한국사회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또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단계적인 도입·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도입·활용할 만한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었느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여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웃간 분쟁 등 현실의 문제들이 경찰사회사업가 제도 도입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역할, 즉 시민의 고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정내 폭력과 관련하여 신고전화의 빈번히 걸려오고 있다는 현실로부터 안락한 생활보호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찰조직 내에서도 ‘봉사하는 경찰상’에 관한 관심이 높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응하는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다소 성숙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시국사건에 큰 비중을 두어왔던 경찰조직으로서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시국사건의 감소에 따라,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역할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경찰사회사업은 경찰위상 재정립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환영받는 레파토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시행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여건들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는 ‘가정문제에 타인의 간섭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이다.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로서 가정은 나름의 결속력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결속력과 질서는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관념이 시민들 뿐 아니라 경찰조직, 그리고 경찰개인들에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가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으로 요약되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가 시민일반·경찰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리라는 판단은 바로 이와같은 전통적인 가족이념에 근거하고있다.

둘째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경찰조직의 보수성과 관련된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나름의 관성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할 때, 경찰사회사업가제도와 같은 새로운 경찰업무는 경찰조직에 긴장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경찰업무의 우선순위에서 시국사건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사건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또는 경찰사회사업과 같은 대민봉사 업무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등은 인력과 예산과 기구개편에서 경찰조직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셋째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활용에 부정적인 여건은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 인력체계, 사회자원체계의 미비문제이다. 실상 경찰사회사업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들이 개정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법개정이 지연된다거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문사회사업가를 경찰사회사업가로 채용하는 문제, 현직 경찰들에게 경찰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과 역동성을 교육·훈련하는 문제, 경찰사회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광범위한 사회자원(각종 상담소, 가정문제치료소 등)의 부재 문제 등이 경찰사회사업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이와같은 부정적 여건은 그러나 단계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여건으로 간주한 전통적인 가족관은 사회변화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고, 변화를 꺼려하는 경찰의 보수성도 시민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내학대문제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지닌 여성운동단체들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추세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단계에서는 가정문제에 경찰이 개입을 주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인력체계, 사회자원체계 등은 위의 두여건들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전문사회사업의 발전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며, 그만큼 경찰조직에서 주도권을 갖고 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사회에서의 요구가 제기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입전략(경찰사회사업가)을 마련하고, 법적 체계에 대비한 정책을 입안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력양성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여건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경찰사회 사업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입안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찰사회사업의 위상과 법적 체계, 인력훈련,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구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 가. 경찰사회사업의 위상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경찰조직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위상을 점할 수는 없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경찰의 전통적인 역할인 치안유지, 질서유지를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위상으로부터 점차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대략 3단계로 나누어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위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 (1) 시범사업단계 (1996년 - 2000년)

앞으로 몇년동안 경찰사회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사회 유형별로 1-2곳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소규모의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s)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사회사업가제도에 관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될 것이며, 소수의 경찰사회사업가가 특별채용형태로 충원되어 한정된 시간과 업무영역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가제도에 대한 경찰조직의 지원은 미미할 것이며, 따라서 그 성과도 미약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시범사업

의 성과는 이후의 단계로 이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가의 역할은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청소년비행사건, 이웃간 분쟁사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지역사회기관에로의 의뢰서비스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에 대한 일반 경찰들의 이해와 협조는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일부 경찰들은 경찰사회사업가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그것이 경찰본연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일반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사회사업의 가치와 역할을 인지시키는 것이 이후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 (2) 전국적 확산단계 (2000년 - 2010년)

시범사업의 결과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시행이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경찰조직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 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경찰이 제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사회의 반응이 제기되면,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에서의 경험을 반영하여 전국적인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반 경찰들도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를 불식하고, 협조와 공감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내에서 전문사회사업가들이 관여하는 다종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이들 사회기관들과 경찰조직과의 상호협조가 경찰사회사업가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3)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안정단계 (2010년 이후)

21세기 전반에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경찰조직의 자연스런 역할목록에 포함되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관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경찰사회사업가 제도가 시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유용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대학에 경찰사회사업학과(경찰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지고, 많은 경찰관 지망생들이 사회사업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입학할 것으로 예

상된다.

#### 나. 법적 체계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법적인 뒷받침없이 시행될 수 없다. 시범사업단계에서부터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특히 조직, 인력충원, 역할과 기능, 책임한계 등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와 관련된 법령들에는 한국 가족의 독특한 특성들—예를 들어 강한 혈연관념, 상존하고 있는 효사상, 친족부양과 친족책임의 원리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형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가정폭력과 청소년비행, 그리고 이웃간 분쟁에 관한 법령들의 해당 조문들이 개정되거나,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통해 가정문제와 같은 문제영역에 경찰과 경찰사회사업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극히 좁다.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와 관련된 법은 미국의 경우에는 주법에 의해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어야 한다.

전국적인 확산단계에서는 경찰사회사업가제도 관련 법령들이 세밀하게 입안되어야 한다. 특히 본법 이외에도 시행령에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안정적 운영단계에서는 제도자체의 관성에 따라 필요시 법령들의 개정 및 제정이 뒤따르게 된다.

#### 다.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성공여부는 인력의 활용에 달려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용이 요청된다. 시범사업단계에서의 인력의 충원은 기왕에 배출된

전문사회사업가(석사 및 학사)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경찰사회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경찰의 조직특성과 역할, 경찰사회사업의 발전과정과 역할,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문제 상담과 가족치료, 가족면접,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동원 등 실무에서 당장 필요한 기초지식들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경찰대학,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인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실상 사회사업에 관한 지식이 적고, 사회사업가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에게 전문사회사업 전체를 교육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은 사회사업의 이해, 가정폭력의 이해, 지역사회자원의 이해 등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경찰사회사업의 전국적 확산단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일부 대학에 경찰사회사업학과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교육은 대학에서 주관하고, 실무교육은 경찰대학에서 주관할 수 있다.

일반 대학에 경찰사회사업학과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경찰대학에서 전공을 분리하여 경찰사회사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찰대학내에 별도의 전문과정이 신설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느 경우이든 모든 경찰대학생들과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경찰관들에게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에 관한 교육훈련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 라. 시범사업의 계획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기초로 향후 5년 정도의 기간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구상해보자. 미국 시카고의 사회서비스계획(SSP)과 디트로이트의 가정문제상담소(FTC)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 (1)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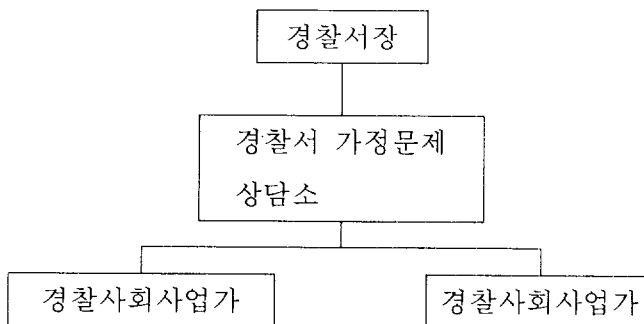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3개 지역을 선정한다. 대도시형으로는 서울경찰청 산하 1개 경찰서를 선정하고, 중소도시형으로는 서울을 제외한 여타 경찰서 가운데 관할인구규모가 20만명 정도인 중소도시를 선정하며, 농어촌형으로는 군단위 경찰서 1곳을 선정한다. 어느 경우에도 경찰서와 인근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와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일단 경찰사회사업가제도 시범사업 경찰서로 선정된 경찰서에서는 시범사업 시행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웃간 분쟁 등에 관한 신고전화와 조치사항을 통계로 작성하여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들 문제들의 예방·해결효과측정을 위한 기초선 자료를 집적하기 시작한다. 이들 자료들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 (2) 조직구조

시범사업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가들은 경찰서와 인접한 별도의 건물에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서내에 경찰사회사업 부서를 두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경찰에 대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사회사업부서의 명칭은 가칭 ‘00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 (Family Trouble Counselling Office at oo Police Department)’로 한다.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조직구조

## (3) 인력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에는 선임경찰사회사업가 1인과 경찰사회사업가 2인 및 사무원 1인을 둔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위해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를 충원한다. 선임경찰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학 석사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교정복지, 아동복지, 상담,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충원하며, 그는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아울러 선임경찰사회사업가는 가족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사회사업가,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지도감독(supervision)을 제공한다. 경찰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학 학사 이상인 학력을 지닌 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된 자이며, 그는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례들에 대해 전화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락조정 등의 임무를 맡는다. 경찰사회사업가는 업무에 있어서 선임경찰사회사업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학사이상의 사회사업가들로서 이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고, 야간근무에 임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 일반시민들 가운데 선발하며,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뒤 무보수로 야간근무를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훈련은 경찰대학과 인근대학의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에서 나누어 맡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 <표>과 같다.

<표>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인력 교육

교육내용	선임경찰사회사업가	경찰사회사업가(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비고 (교육담당기관)
경찰조직의 이해	4시간	4시간(2시간)	경찰대학
경찰사회사업의 이해	16시간	16시간(8시간)	경찰대학
가정폭력의 이해	8시간	8시간(4시간)	인근대학
상담기술 및 실습		16시간(8시간)	인근대학
지역사회자원의 이해		4시간(4시간)	인근대학

#### (4) 업무

경찰사회사업가의 업무는 미국 SSP와 FTC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화상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웃간 분쟁 사건들 가운데 경찰관이 의뢰한 사건들에 대해 전화로 상담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전화상담의 태세를 갖추는데, 근무시간(09:00부터 18:00, 또는 17:00까지)에는 이들이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퇴근 후에는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가정폭력이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는 일과시간외 나머지 시간을 모두 담당한다. 이들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들은 경찰사회사업가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임무에 투입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례에 있어서는 선임경찰사회사업가, 경찰사회사업가에게 의뢰한다. 선임경찰사회사업가와 경찰사회사업가는 야간에 필요시 자택에서 전화상담을 하며, 이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받는다.

##### 2) 현장출동 및 가정방문

경찰사회사업가는 사건현장에 경찰관과 동행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들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필요시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 3) 자발적인 서비스 대상자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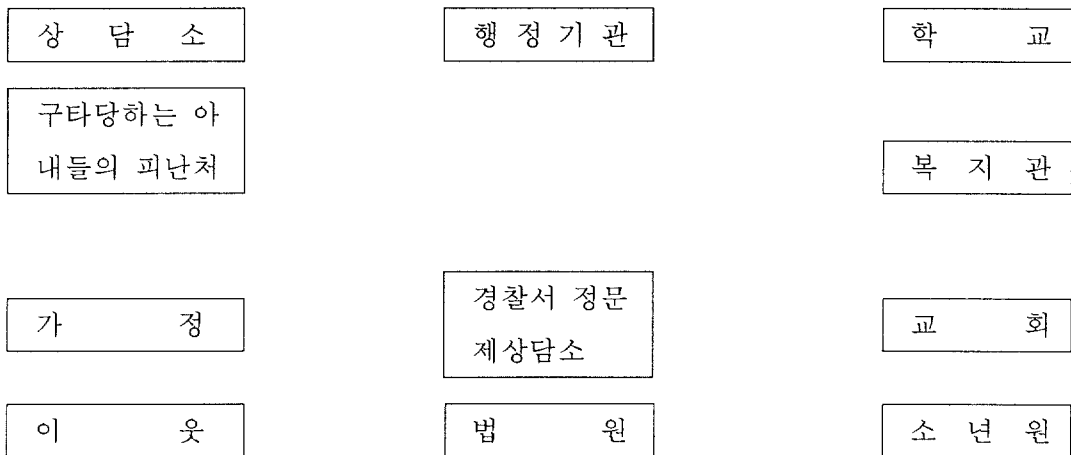
자기 스스로 가정문제상담소를 찾아오는 자발적인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마련된 면접실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지역사회자원 활용

경찰사회사업가들은 종종 서비스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하거나, 이들 서비스 기관에 의뢰한다. 예를들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생활보호서비스 대상자로 특정 대상자를 책정하도록 의뢰한다든가, 모자원에 가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학대받는 아내들의 피난처와 같은 일시보호서비스 시설에 대한 안내나 의뢰,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여성의 전화라든가

가정법률상담소, 생명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유지들로부터 답지된 성금과 후원금을 극빈대상자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에서 유기적인 연락조정을 하는 지역사회자원으로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림〉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와 연락조정하는 지역사회자원

#### 마. 사후지도서비스(follow-up services)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일단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지속적으로 전화상담, 가정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상황의 진전을 파악하고, 필요시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바. 기록관리와 평가

경찰사회사업가들이 수행한 모든 활동은 이후의 평가를 위해 철저히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들의 수사자료로 이 기록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이들 기록은 경찰사회사업가들이 서비스 대상자들을 원조하기 위한 서비스전략모색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또한 그런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는 것이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경찰관들은 이 기록을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생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선임경찰사회사업가가 해야 할 일이다.

# I. 서 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날로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로부터 벗어나 전체시민들의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최근 도시화와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청소년범죄와 비행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내부에서 자녀학대나 노인학대, 배우자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 간의 사소한 '이웃간 분쟁'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예방과 선도보다는 일단 비행이 이루어진 후의 사법적인 처리에 치중해왔다. 그에 따라 사회에서 (비행청소년과 제일 먼저 대면하게 되는 경찰을 포함하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상담, 선도, 직업알선, 가정문제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청소년 비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내부의 폭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까지 경찰의 개입은 '무개입의 개입'이었고, '사후약방문'식의 개입이었다. 얼마전 TV 시사프로에서 소개되었던 '부모에게 맞아 죽은 아이'의 사례나, 며느리, 자식에게 맞아죽은 노인, 남편에게 매맞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일 등등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끔찍한 사건들은 이 시대 경찰에게 '가정문제는 남이 간섭해서는 안될 문제이다'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건들이었다. 이제 가정폭력은 경찰이 개입해야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일부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아무런 개입수단을 동원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부모에게 맞아죽은 아동문제의 경우 서울경찰청의 여자경찰들이 이사건을 인지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결국 아동이 맞아죽었다.)

이웃간의 사소한 분쟁이 끔찍한 사건으로 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차시비, 소음시비, 아동들 간의 갈등이 부모간의 폭력행사로 이어지는 현실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이웃간의 사소한 분쟁은 그 초기단계에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결과 지극히 사소한 분쟁이 살인을 결과하는가 하면, 소모적인 법정쟁송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현행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 하고 있다. 이제는 사후 대처리에 머물고 마는 경찰의 개입보다는 초기 진행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 내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이나 부녀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이웃사람들이 신고할 경우 경찰관과 경찰사회사업가가 즉시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치(예를 들어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격리하여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부모는 경찰서에 호출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한다던가, 처벌(체형, 벌금형)을 받도록 한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참견하느냐?는 것이 보통의 반응이다) 사건이 심각하다는 기미가 있어도 개입할 인력이 부족하며(최근의 여자경찰도 치안사건에 주로 동원된다) 경찰 조직 내에 전담부서가 없음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외출한 부모가 자녀의 귀가 시간까지 집에 와있지 못하여 자녀가 문밖에서 울고 있다면 이웃의 신고로 당장 경찰과 사회사업가가 출두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에게는 엄중한 벌(주로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경찰의 조직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시국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경찰이 어떻게 위와 같은 일에 ‘시민의 지팡이’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연구자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바람직하게 해결,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찰조직에 ‘警察社會事業家(police social worker)’ 제도가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사업가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과 해결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병원, 학교, 군대, 경찰, 교정기관(소년원,교도소), 재활원, 각종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사회복지 이용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갖춘 상담, 조정, 대변, 가정방문, 가족

치료,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조정, 사후지도 등의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사회문제의 예방, 완화 및 해결을 시도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경찰 조직내에 전문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가정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이웃간 분쟁 등 비교적 부드러운 사회문제들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교정직, 보호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회사업(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다수 채용하고 있다. 이제는 경찰 조직에서도 사회사업가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는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과제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외국의 경찰 사회사업가 제도를 고찰하는 것으로서, 법적근거, 도입시기, 주요활동, 인력충원 방법, 조직구조, 성과와 과제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두번째의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경찰조직에서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도입·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비행문제를 다루는 경찰서 청소년 대책반을 비롯한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직경찰의 의견을 구해 보고, 경찰에 인지되었거나 인지되지 않은 각종 가정문제를 경찰서와 가정문제 상담기관으로부터 파악하여, 경찰의 개입지점과 역할목록을 개발하고자 한다.

세번째의 연구내용은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자가 경찰청 치안연구소를 방문함으로써 얻은 두가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 치안연구소 이강덕 경정과의 대화를 통해 연구자가 얻은 귀중한 결론 중의 하나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에 관한 설명이 연구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선 경찰들도 사회사업가나 사회복지사가 무슨 전문직인지도 모르는(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상적인 경찰사회사업가제도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비현실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얻은 결론은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경찰 자신들의 이미지, 그리고 일선 경찰조직에서 사건기록이나 자료를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료를 입수하거나 연구내용을 이끌어 나가는데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는 현재의 경찰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가정폭력, 이웃간 분쟁 등이고,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매우 이상적인—다시 말해 경찰의 봉사적 활동을 매우 강조하는—제도라는 점이다. 경찰조직에서 이제까지 다루어온 문제들은 강력범죄, 시국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었고, 이러한 사건들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견지에서 임했다는 점으로부터 이 연구과제의 결론에서 제시한 정책건의는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라기 보다는 21세기 경찰조직의 개편에서 반영될 수 있는 장기과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21세기 경찰상의 정립을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점진적인 경찰사회사업가 도입·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찰사회사업의 개념 및 발전과정

경찰사회사업(police social work)이란 경찰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사회사업 실천을 의미한다. 경찰조직에서 사회사업이 실천된다는 것은 사회사업가의 활동 무대가 경찰조직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의 역할목록에서 대인 원조(봉사)라고 하는 사회사업실천의 기능들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경찰사회사업은 전문사회사업이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미국에서 경찰과 사회사업전문직간의 협동이 이루어진 배경을 통해 경찰사회사업의 개념과 그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가. 경찰사회사업의 대두

##### 1) 과거의 상호 불신

경찰과 사회사업가 사이의 교류의 부족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편견, 경험 그리고 적대감으로 인해 두 전문직간의 거리감은 증가되었다.<sup>1)</sup> 경찰은 한번도 사회사업가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한 서비스 의뢰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사회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경찰은 사회 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서비스기관들이 경찰의 서비스와 조언에 관한 요청 그리고 초기개입과 위기개입이 필요한 원조대상자(client)에 대한 서비스 요청에 자주 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 사회사업가들은 이에 대한 이유를, 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향상되는 정도가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1) Harvey Treger et al., The police-social work team: a new model for interprofessional cooperation,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5, pp.74-91.

사실을 경찰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경찰과 사회사업가 사이의 협동작업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실제와 이론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arkinson(1980)은 ‘성별에 따른 역할 장벽’이 경찰과 협동 작업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었다.(사회사업가의 다수가 여성이다.) 또한 다른 이들도 경찰들은 범집행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사업가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경찰과의 협동작업은 ‘물과 기름’처럼 융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경찰은 응급상황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반면, 사회사업가는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 2) 협동필요성의 대두

경찰은 오랫동안 교육, 건강,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었으나 수년 동안에 이 기능들의 대부분이 사회사업가에게 떠넘겨졌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에게 요청되는 서비스의 50-90%는 사회 서비스적인 성격을 지닌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사회서비스 기관이 문을 닫았을 때면 더욱 경찰에게 도움을 청한다. 경찰은 전통적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서비스에 관심을 가졌었으며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었다. 그러한 경찰 즉, 응급상황이나 폭력을 통제하는 훈련만을 받아 온 경찰에게 “가정폭력”이나 이웃간의 분쟁 등에 관한 요청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며 시간만 소비하는 일이었다. 또한 체포만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거나 피해자를 안정시킬 수는 없었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인가 또 다른 서비스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경찰들은 가정폭력이나 다른 가족위기에 관하여는 점차 사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사회사업과의 협동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 나. 두 전문직의 협동 관계 발전

### 1) 각 전문직의 노력

### (1) 사회사업가의 노력

경찰사회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사회사업가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앵글우드사업(Englewood project)이었는데, 이는 소년법원으로 의뢰할 만큼은 심각하지 않은 17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경찰업무를 배우려는 사회사업가의 노력으로, 경찰업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특수성을 알게 되어 협동관계는 더욱 쉽게 촉진될 수 있었다. 경찰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그들의 업무를 배우려는 사회사업가의 노력을 통해 경찰들도 사회사업가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선입견없이 그들을 대하게 되었다.

경찰과 사회사업가의 협동 프로그램은 확인된 문제가 있거나, 경찰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현존하는 경찰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2) 경찰의 노력

경찰사회사업과 밀접히 관련하여, 사회사업가에 관한 경찰의 노력도 많았는데, 이 대표적인 예로는 심리학자이자 경찰관인 Jacob Chwast 경위의 감독 아래에 있던 New York시 경찰부서의 원조국에서였다. 이모델은 본질적으로 경찰사회사업과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Chwast경위는 사회사업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3가지 사항을 건의하였다. 첫째, 시당국 즉 경찰이 치료과정에 방해가 될 필요는 없으며, 사회사업이 이를 잘 이용한다면 좀 더 훌륭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만약 24시간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저항적이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원조대상자(client)에 대한 치료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경범자에 대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위기개입 치료의 가치를 사회기관들이 보다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 요소 모두는 후에 시카고 지역 경찰사회서비스계획(SSP)에 반영되었다.

경찰들은 위기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의뢰하는 기술을 배워야 했는데, 사회사업가가 즉시 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의 의뢰효과는 향상되었다.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찰부서에 있는 사회사업가의 이용가능성의 증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개방적이 됨에 따라 경찰은 사회사업가에게 더욱 많이 의뢰

하게 되었다. 정신건강의 응급상황, 부부불화, 부모-자녀 의견충돌, 가출,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족 위기에 관한 요청은 모두 경찰과 사회사업가의 협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런 팀의 노력으로써 경찰과 사회사업가는 서로의 역할에 대하여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은 사회사업가의 개입과정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2) 관계의 발전

### (1) 관계의 형성

의심과 불친절로 두 전문직 사이에 갭이 생겼기 때문에, 협동 작업에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은 대인 접촉이었다. 사회사업가가 경찰부서 내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그들은 팀의 일부로 서로에게 수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경찰은 자신들을 알고 신뢰해 주는, 그들만의 사회사업가들이 필요했다. 경찰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데 있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사업가가 경찰부서 밖에 있는 경우에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성립,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때에는 대인 접촉이나 조언에 관하여 경찰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두 전문직이 처음 협동작업을 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이슈들이 이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경찰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하위문화, 직업의 특징, 다루는 문제의 종류 그리고 특수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에 민감하게 협동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경찰은 의사결정권과 권위를 보유하고자 했던 반면, 공공 서비스의 제공과 두 전문직간의 초기협동과정에 있어서의 공통과제는 사회사업가가 해결하기를 원했다. 두 전문직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은 감소되고 협동노력은 촉진되었다.

### (2) 관계의 발전

사회사업가가 경찰서비스에 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의뢰를 받아들이며 원조대상자(client)의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환류(feedback)하고 경찰에게 조언과 훈련을 제공함에 따라 경찰과 사회사업가와의 관계는 강화되었다. 두 전문직은 서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알아감에 따라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다. 사회사업가는 그들의 고유

영역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융통성과 서로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주어야만 했다.

### ① 의사소통의 발전—비밀 보장의 문제 해결

경찰과 사회사업가는 협동관계의 경험으로 보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두 전문직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사업가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모두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는데, 1972년의 시범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회사업가는 원조대상자(client)와 동의한후 경찰과 함께 서비스를 평가하고 계획하였다. 사회사업가는 원조대상자(client)와 첫번째 면접시 그의 행동이 그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상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경찰에 알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원조대상자(client)의 동의에 따라서 원조대상자(client)－사회사업가 사이의 비밀보장 관계는 유지될 수 있었다. 경찰은 사회사업가에게 원조대상자(client)를 의뢰하며, 사회사업가는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민감한 사회·심리적인 사항을 제외한 상담을 활용하는 동기와 능력, 범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원조대상자(client)에게 이로운 서비스 등을 경찰에게 환류(feedback)한다. 이로써 경찰은 자신이 의뢰한 원조대상자(client)가 프로그램에 협조하고 있는지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② 경찰을 대상으로 사회사업가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사업가는 가끔 비공식적인 상담서비스를 경찰에게 제공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전문직의 노력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경찰들은 외부의 치료자들보다 사회사업가들을 종종 더 신뢰한다. 어떤 경찰 부서에서는 사회사업가가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하여 경찰을 훈련시키며 경찰이라는 직업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룹토의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협동작업과 상담은 직업관계에 있어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므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태도의 변화

경찰사회사업가제도 이전의 사회사업가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거의 부정적이었으며 불신과 의심, 사회사업과 사회사업가의 역할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거의 교류를 하지 않았었다. 프로그램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75-80%의 경찰들이 이 제안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졌고 회의적이었다. 이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자 그들은 이를 시험해 보려는 태도로 바뀌었으나 점차 이런 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철학적인 차이나 가치체계적인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사실상 직업철학에 관해서 그들은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에 대한 경찰의 태도의 변화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어느 시간이든지 계속되는 요청에도 활동 가능한 경찰사회사업가 : 24시간 어느 때이든지, 경찰의 의뢰를 받으면 즉시 현장이나 경찰서로 나가 위기개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는 경찰에게 큰감명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 주었다.

(2) 경찰에 의해 의뢰된 원조대상자(client)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 어느 시간이든지 나와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충분히 위기상황을 마무리지었으며 사후관리(followup service)까지 적절히 제공하였기에 경찰사회사업 서비스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이로써 경찰은 사회사업가를 더욱 믿고 신뢰하며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3) 경찰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보다 중요한 경찰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됨 : 가정폭력이나 이웃간의 분쟁 그리고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정신건강문제 등을 경찰사회사업가가 다룸으로써 경찰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중요한 경찰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 다. 두 전문직의 협동 작업으로 인한 장점

경찰, 사회사업가 그리고 지역사회는 협동 관계를 맺음으로써 모두 이득을 얻

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사회문제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안을 얻게 되었고 사회사업가는 새로운 대상집단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시켰으며, 두 전문직의 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사회는 더욱 안전하게 되었다. 정신건강분야와 가족, 이웃간의 분쟁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적절한 조언이나 개입은 경찰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자주 도움이 되었다.

### 1) 응급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경찰이 의뢰한 원조대상자(client)들은 응급상황에서도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경찰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도움받기를 원하므로 종종 감정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위기상황에서 원조 관계가 성립되면 그들은 이 관계가 지속되기를 몹시 원하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는 그들의 이런 불안을 인지하고 빨리 대응해 주어 그들이 사회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 2) 경찰의 권위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경찰부서내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거부하는 원조대상자(client)에게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도 받으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회기관과의 접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찰의 권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공 안전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내부동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게하기 위해서는 외부권위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가족치료 서비스).

### 3) 사회통합 용이

경찰사회사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어느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3년 동안 소년법원에 의뢰한 사례의 횟수가 현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이로써 경찰사회사업가들은 청소년들을 소년법원에 보내기보다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법원에서 형

을 받은 사람보다 보호관찰제도를 받은 사람은 수치심(stigma)을 훨씬 적게 느끼며 재범율도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더 쉽다.

#### 라. 경찰-사회사업가 협동의 성과

사회사업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경찰사회사업’이라는 전환기제를 제공함으로써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 오해를 방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경찰과 사회사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2. 경찰사회사업의 유형들

경찰과 사회사업간의 협동에 의해 이루어진 경찰사회사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을 경찰이 지역사회 사회사업기관에 의뢰하는 단순한 협동차원에서부터, 경찰조직에서 사회사업가를 채용하여 경찰과 팀을 이루며 문제들에 대처하는 매우 적극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경찰과 사회사업 기관과의 원조대상자 의뢰와 정보교환은 사실 경찰사회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경찰사회사업으로 지칭하기에 부적절하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경찰사회사업 실천을 시카고지역의 사회서비스계획(SSP : social service project)과 디트로이트 지역의 가정문제상담소(FTC : family trouble clinic)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시카고 지역의 사회서비스계획(SSP)

1970년 미국 Chicago 근처의 도시 Wheaton과 Niles에서 처음으로 경찰사회사업 계획이 실시되었다.<sup>2)</sup> 경찰사회사업은 사회사업가를 경찰서 내에 배치하여, 사회

2) 앞 글, pp. 15-32.

사업가가 경찰로부터 원조대상자(client)를 의뢰 받아 사회적인 평가, 24시간 위기 개입, 지속적인 치료, 사후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리노이즈 법집행위원회, Wheaton 과 Niles 지방당국에 의해 재정지원되었으며, 일리노이즈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의 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요점은 경찰과 사회사업가가 가능한한 빨리 접촉하여 원조대상자(client)에게 초기에 개입함으로써 그 개인과 가족, 일이 많은 경찰과 지역사회에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목적

(1) 경범죄를 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체포되었을 당시, 그리고 기소되기 전에 사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찰서비스와 보호를 확대코자 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2) 체포되었을 때 또는 그 전에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3) 경찰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조치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법조계 내에서 경찰과 교정사회사업가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킨다.

(5) 경찰과 사회사업가들이 공동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6) 학교와 같은 지역사회기관과 협조하고 필요하면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원조대상자(client)가 이 새로운 상담 서비스 모델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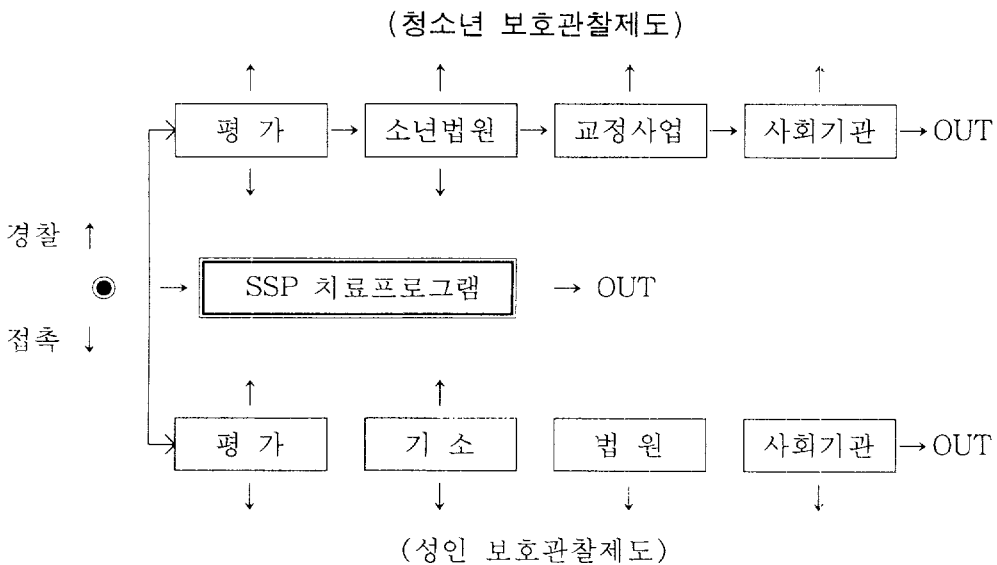
(8) 지역사회에 있는 예방서비스들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체포되기 전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 경찰이 청소년과 그 가족의 문제점 그리고 미성년자 집단을 더 민감하게 이해하도록 사회문제에 관한 전문가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0) 법집행기관과 사회사업사이의 교류증진의 통로를 개선시킨다.

2) 기능과정

경찰사회사업이 기능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 경찰은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과정에서 경찰사회사업가에게 보내기도 하며, 평가에 따라 성인은 기소하고 미성년자는 소년법원으로 보낸다. 이 단계에서도 경찰사회사업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보호관찰소로 보내진다. 형집행이 끝나면 모두 사회기관으로 의뢰되어 재활 과정을 거쳐 마치게 된다.



(그림 1) SSP의 사법체계에 관한 순서도

3) 운영

(1) 인력 확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자질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였다. 직원의 자질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즉 전문적인 자질, 개인적인 자질, 경찰과 특정 지역사회 내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처음 두 가지 요인은 관련 학교의 지도감독자(supervisor)에 의해서 평가되며 세번째 요인은 경찰서장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모든 직원이나 사회사업

학과 학생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결정권과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① 전문적인 측면 : 정신건강,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두 전문직간의 협동 작업에 관한 지식 즉 개별지도(case work)에 관한 기술과 팀을 구성하여 일을 처리하는 능력 즉 집단지도(group work)에 관한기술이 요구된다.

② 개인적인 측면 : 사회적 서비스에 관하여 열의가 높고 사회사업가로서의 역할이나 정체감이 확고한 사람을 말한다. 특히, 어떻게 타인들이 자신에게 반응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으며 경찰들과의 효율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인 융통성을 의미한다.

③ 경찰과 특정 지역사회 내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능력 : 위의 두 가지 자질 외에, 친절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며 경찰이나 원조대상자(client)에게 편하게 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SSP로의 의뢰

SSP로 의뢰되는 사례의 대부분은(63.8%) 경찰에 의한 것이다. 이는 누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누가 사법처리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가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문지기로 표현되기도 한다. 경찰은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반면, 사회사업가는 누구에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들은 가끔 개인이나 가족이 SSP로 의뢰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 함께 의논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전문적인 판단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사회사업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데, 주로 문제 확인, 범죄에 대한 태도, 경찰사회사업 과정에 협동하겠다는 원조대상자(client)의 의지를 의뢰의 기준으로 본다.

경찰이 SSP로 사례를 의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㉔의뢰되는 사례들

① 비폭력 경범죄를 지은 사람, 다른 상황에서 경찰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거나 가족이나 또래집단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부모가 신고한 사항으로써 부모가 통제하지 못하거나, 잦은 무단결석, 음주,

### 도둑질하는 청소년

- ③ 부모, 부부 또는 개인문제로 청소년문제가 예상되는 가족.
  - ④ 경찰이 보았을 때 상황에 비해서 행동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할 때— 과도한 음주, 약물 소지.
  - ⑤ 가족 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모.
  - ⑥ 조정 배치 사항은 적절한데 사회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
  - ⑦ 뚜렷한 문제가 있으나 사실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
  - ⑧ 학교에서 의뢰한 사람
  - ⑨ 경찰—사회사업가의 논의에 따라서
  - ⑩ 현재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는 하나, 경찰이나 그 개인이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과정을 원할 때
  - ㉠ 의뢰되지 않는 사례들
  - ① SSP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써 부모와의 관계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초범자
  - ② 소년 법원으로 의뢰해야 하는 심각한 중죄자
  - ③ 전에 SSP로 의뢰되었었던 사람
  - ④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또래집단의 규범을 지키고 있는 사람
- 대부분의 의뢰기준은 청소년에게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원조대상자(client)들이지만, 성인은 기소유예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자발적인 원조대상자(client)들이다. 만약 원조대상자(client)들이 개방적으로 서비스를 대한다면 그들은 SSP서비스를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원들은 생각하였다. 경찰이 의뢰한 사례 중 92%가 적절하였다고 밝혀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경찰이 결정할 문제이다.

### ㉠ SSP의 24시간 운영

SSP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철학이 발전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기관들은

24시간 위기개입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들은 주로 전화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었고, ‘24시간 대인서비스’는 꺼려하고 있었다. 대인서비스가 위기개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SSP직원의 의견이었다. 응급상황에서 준비하고 직접 나가는 것이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으며,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보다 훌륭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 또한 원조대상자(client)는 한밤중에 자신을 보러 온 사회사업가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 ① 융통성

이 철학은 Wheaton과 Niles에서도 적용되었는데, Wheaton에서는 SSP 직원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였다. 하루 종일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밤 근무도 1주일에 1일 또는 2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고정된 스케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거나 경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되어 있다.

### ② 필요성

정신건강문제는 밤이나 낮 언제든지 경찰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의 대부분은 사회사업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함을 알기 때문에 24시간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경찰들은 그 상황이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훈련을 받아, 만약 사회사업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바로 사회사업가에게 연락을 하였다. 사회사업가는 보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연락을 받은 즉시 그 현장이나 경찰서로 나갔다.

### ③ 중요성

24시간 대인서비스가 가능함은 SSP 성공의 주요 이유중의 하나로 입증되었다. SSP가 운영된 첫번째 달에 위기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오전 3시에 Wheaton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을 경찰서로 데리고 온 사례에서였다. 경찰들은 정신병으로 판단하고 사회사업가에게 연락했으며 사회사업가는 바로 경찰서로 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첫번째 위기개입 요청으로, 경찰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나와서 일을 해 준 사회사업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더

빨리 긍정적으로 SSP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 4)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경찰사회사업가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에는 위기개입과 개인.가족 치료와 집단서비스가 있다.

##### (1) 위기개입

사회사업가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경찰이나 원조대상자(client)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초기개입’을 매우 강조하였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회사업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이 의뢰하여 이루어진 경우들이다. 사회사업가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범죄의 성격,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경찰의 견해와 경험, 원조대상자(client)의 태도와 행동, 범행의 시간 등이다. 경찰이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정신건강 측면과 관련된 부분들이었다.

##### (2) 개인.가족치료와 집단서비스

SSP는 청소년(51.9%), 미성년자(17%) 그리고 성인(31.1%) 들에게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문가들의 지도감독 아래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원조대상자(client)들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의뢰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빈번히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비행과 관련된 내부, 외부 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사업가의 목적은 이런 요인들을 이해하여 원조대상자(client)와 그 가족들에게 좀 더 스스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를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었다. 경찰사회사업가가 제공하는 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지적 서비스, 교육적 서비스, 심리적응서비스, 부부관계 상담과 환경을 이용하는 기술교육 등이 그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원조대상자(client)에게 치료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결정에 따라서 제공되며, 이 중에서 개인과 가족치료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사회사업과는 달리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법 집행이전에 관계하며 원조대상자(client)의 욕구에 의존한다. 원조대상자(client)와 사회사업가는 상호 성취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원조대상자(client)자신, 그의 행동, 그가 원하는 변화의 여부는 모두 원조대상자(client)에게 달려 있다. 그리하여, 원조대상자(client)는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자신을 교정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5) 경찰과 사회사업가의 교류

경찰사회사업가 제도 내에서 경찰과 사회사업가간의 관계특징을 협동, 조화 그리고 상호신뢰와 보조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성공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다음 사항들에 기인한다고 본다.

##### (1) 경찰의 자질

(2) 사회사업가의 자질 : 경찰 측과 협동하여 수행하는 과정을 선택, 경찰 측의 초기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다루어 나가는 기술

(3) 원조대상자(client)중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사회사업가와 경찰간의 훌륭한 협동작업

(4) 경찰서 내에서 사회사업가가 함께 위치해 있음 : 물리적 장소.

(5) SSP 업무수행과정이나 목표달성과정에서 경찰들간에 어떠한 경쟁도 보이지 않음 : 경찰사회사업 과정에서나 성과를 얻어내는데 있어서 경찰부서 내에서는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 또한 여성 사회사업가들과 함께 하는데 있어 불평이나 문제들도 없었다. 더욱이 경찰 측에서는 '사회봉사 제도에 선택되었다' 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경찰사회사업가들에게 경찰직업에 대하여 가르치는 등 보호를 하려고까지 하였다. 사회사업가들은 전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서 목표를 훌륭히 달성했고 경찰과 합동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다.

#### 6) 다른 경찰부서와의 협동

법 집행기관들은 수행해야 할 작업이 있으면 항상 몇 개의 기관이든지 서로

협동하게 된다. 이런 기관들이 협동관계를 맺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관할권, 법적관심, 권력, 효율성, 전문성 그리고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빈번히 있는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Wheaton 경찰국의 청소년 담당부서내에서도 많은 협동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Wheaton이나 Neils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종류의 사례에서는 그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담당관과 협동하게 된다. 이처럼 SSP도 다른 경찰부서와 협동하게 되었다.

Dupage지방 경찰과의 교류 중 대부분은 기소유예 프로그램과의 연계였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도, SSP경찰은 범인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과 원조대상자(client)에 대한 경찰의 생각을 알기 위해 체포담당경찰과 연계하였다.

다른 부서의 경찰과 연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도시들이 SS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이다. Wheaton의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도시인 Glen Ellyn에서도 SSP와 비슷한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를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여러사례(case)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Wheaton북쪽에 있는 도시인 캐럴 스트림(Carol Stream)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며 여러 사례를 SSP에 제공하였다. 그 후 SSP가 주기적이고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 두 도시는 Wheaton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었다.

## 7) 성과

Chicago근처에서의 경찰사회사업계획은 3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약 1,000명의 원조대상자(client)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경찰, 경찰사회사업가 그리고 지역 사회 기관과의 가시적인 관계들로 이 작업의 가능성과 유용성은 증명되었고, 경찰이 이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경찰사회사업이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가정문제상담소(FTC : Family Trouble Clinic)

이 프로그램은 Detroit & Wayne County의 가족 서비스 기관과 Detroit의 경찰청 간의 협동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가정폭력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긴요한 상담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명확해진 지역사회의 욕구와 경찰과 사회사업 전문직이 가정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기대에서 시작되었다.<sup>3)</sup>

이 프로그램 서비스는 일주일 내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주간에는 정규 전임직원이,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Detroit시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준의 사회사업 유용성(a degree of social work availability)을 제공해 주었다. 이 사회사업 유용성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두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입증된 서비스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경찰과 사회사업 전문기술들은 차이가 있고 분리되어 있던 두 분야의 특징들이 각각 유지되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서비스가 부유하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클라이언트 집단에 유용할 뿐더러 신규의 접근이 어려운 클라이언트 인구집단에 대해서도 전화나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효과적인 개별적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가정폭력 즉 바꿔말하면 부부간, 친척간, 친구간,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의 폭력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흥미로운 화제거리였다. 이 관심은 범죄 수치가 놀라운 수준에 이른 대규모 도시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Detroit에서는 몹시 두려워하여 범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주민들과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살인폭력에 초점을 맞춘 1974년 경찰의 통계는 Detroit에서 살해된 자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낯선 사람에게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발표했다. 1978년 한 해 동안 집계된 경찰통계는 Detroit시 당국에 보고된 것만 12,778건의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Homicides) 486건

3) Walker, Edna Todd, Family Trouble Clinic : a police-social work approach to family violence, Family Service of Detroit & County, 1979

강도(Rapes) 1,288건

기타 폭력(Other Assaults) 11,021건

약 6개월(1978년 11월-1979년 4월)이 넘는 기간동안 Detroit 경찰청에 의해 기록된 통계에 의하면 매달 평균 600여건의 가정폭력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경찰과 정계인사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빈번히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오래된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

활발한 여성운동 또한 가정내 폭력 수준에 대한 자각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 다양한 여성운동 단체들은 구타당한 아내문제에 확실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여러 운동으로 Detroit에서는 가정폭력이 진정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가정폭력과 연관된 문제들을 탄원하는 새로운 주법안, 증가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탄원하는 새로운 주법안, 증가한 긴급 구호시설 그리고 가정폭력 가족들과 피해자를 위한 증가된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가정문제 상담소(Family Trouble Clinic)는 Detroit경찰청의 협력으로 Detroit & Wayne의 가족서비스(Family service)가 맡게된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가정폭력으로 희생되었거나, 경찰개입을 싸움을 말려주는 자원으로만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유용한 위기상담을 해주는 데에 있다.

가정문제 상담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F.T.C.의 대상 클라이언트와 의뢰 방법

### (1) 대상 클라이언트

① 생활하면서 폭력을 당했거나 폭력문제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는 개인 및 가족

② 가족 폭력의 전체 영역 :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성인 자녀에 의한 노인 부모 학대, 미성년자 아동에 의한 부모 학대, 형제간 학대, 가출 젊은이들의 살인 위협 등.

③ 기타 정신의학적인 의뢰

### (2) 의뢰 방법

① 가정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이 개입했을 때, 경찰의 상담 요청에 따라 즉시

의뢰한다.

② 경찰이 FTC 상담 신청양식에 기록하여 상담을 요청한다.

2) FTC 운영의 기본 가정

(1) 클라이언트는 폭력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

(2) 클라이언트는 상담 기관을 그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으로 인지하지는 않는다.

(3) 즉각적인 위기가 일단 지나면 클라이언트는 상담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따라서 F.T.C.의 기본 철학은 "서비스는 그 즉시로 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목적과 목표

1) 목적 (Goals)

① 즉시로 이용가능한 긴급한 원리에 입각하여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Detroit 경찰청에 의뢰자원을 제공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경찰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③ 사회사업과 경찰 전문직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여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2) 목표 (Objectives)

① 가정 내 폭력의 범위를 축소한다.

② 사회사업의 유용성을 제공하여 경찰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위탁자원을 보유하게 한다.

③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더 넓게 인식하게 하여 가족단위를 강화한다.

④ 폭력적인 개인을 도와 환경, 결국은 내부의 통제기제를 단련시켜 폭력의 총

동에서 나오는 행위를 규제한다.

⑤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에 대안을 제공한다.

⑥ 가족들에게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공한다.

⑦ 지역사회와 경찰에게 상담이 가정폭력을 다루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관심을 촉진시키고 교육을 시켜 의뢰과정을 촉진시킨다.

⑧ 경찰과 사회사업기술들의 혼합을 증명하기 위해 전 경찰인원을 개별케이스에 참여시킨다.

#### 라. FTC 서비스의 두가지 형태

##### 1) 첫 번째 형태

-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 제공
- ② 한 주에 최소한 3일 이상은 저녁 8시까지 서비스 제공
- ③ 주말 (토요일) 약속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직원들이 돌아가며 제한된 시간동안 서비스 제공

##### 2) 두 번째 형태(On-call, 전화 상담 서비스)

- ① 시간제 직원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
- ②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서비스 제공
- ③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3시(18,1/2시간 근무교대)까지 서비스 제공
- ④ 사회사업가의 집 또는 가정에 있는 자동응답기, 전화로 서비스 제공
- ⑤ 응답 서비스에 워커가 반응하는데, 클라이언트와 대화하는 평균 회신 오차는 4분을 넘기지 않는다.

#### 마. 클라이언트 집단(Client Population)과 FTC

1) Detroit 경찰의 제 16구역 (16th precincts)

① 지리적 측면 : 도시의 가장 북부 지역이며 경찰 관할 구역 중 가장 큰 지역이다.

② 경제적 측면 : 다소 부유한 계층의 시민들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성 시민들은 가난한 낮은 계층부터 부유한 중상류 층까지 분포되어 있다.

③ 주택 유형 : 공공주택 계획단지, 몇 종류의 두가정 거주지, 몇몇 아파트 건물들이며, 대다수는 1가족 1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 소유이다.

④ 문화 유형 : 흑인 거주지이면서 많은 수의 백인 거주자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

2) Detroit 경찰의 제 10구역 (10th precincts)

① 지리적 측면 : 16구역과 근접하며 좀 더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② 경제적 측면 : 공적부조나 사회보장 수당을 받는 주민 등 가난한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③ 주택 유형 : 아파트 건물이 대부분이고 다세대 주택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임대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④ 문화 유형 : 10대 비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부모-자녀간의 문제, 학교 문제가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FTC 센터의 위치

① 16구역, 10구역의 경찰 지서와 5마일 내에 위치해 있다.

② 건물 내 업무가 많고 의뢰인들이 다양하며 사람과 교통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③ 대중 교통이 편리하다.

④ FTC의 위치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바. 조직( Organization)

### 1) FSDWC와 FTC

#### (1) FSDWC(Family Service of Detroit & Wayne County)

- ① 6개의 관할 사무소로 구성
- ② 사무소들은 명확한 지리적인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기관의 정책은 24인의 이사회 (the Board of Detroit)에 의해 결정된다.
- ④ 이사회는 각 기관의 실행위원(Executive Director)을 고용할 책임이 있다.
- ⑤ 실행위원은 기관활동의 운용과 기관정책의 판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
- ⑥ 실행위원은 프로그램을 위한 준실행위원과 행정관리를 위한 준실행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2) FTC

- ① FSDWC의 6개 관할기관들과 다소 유사한 유형의 훈련된 특별기구이다.
- ② 명확한 유형의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그룹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3) FTC 직원들

- ① 프로그램을 위한 준실행위원(Associate Executive Director for Program) : 프로그램 실행 및 판단, 연구활동의 계획 및 착수, 경찰과의 협력활동, 지역사회와의 관계 향상, FTC의 이사회 의결을 위한 수정안 제출 등의 책임을 진다.
- ② 관할지역관리자(District supervisor) : 프로그램 정책을 실시, 프로그램 운용상의 장점, 약점보고, 행정유지, 지역사회와 공적 관계에 있어서 기관의 대변인으로서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양과 유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와 요원개발노력,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 ③ 가정문제 상담 케이스워커(Family Trouble Clinic Social Worker) : 클라이언트에게 위기 상담과 케이스워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은 공인된 사회사업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에 준하는 전문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④ 가정문제 전화상담 케이스워커(Family Trouble Clinic On-Call Case Worker) : 정규근무 시간외 요청에 따른 긴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사회사업 석사학위 수준이며 거의 모든 기관의 다양한 관할 지역에서 전임제로 근무하고 있다.

⑤ 가정문제 전화상담 예비케이스워커(Family Trouble Clinic On-Call Back up Person) : 정규 전화상담 워커가 바쁠 경우 상담 서비스를 대신 제공한다.

⑥ 가정문제 상담소 비서(Family Trouble Clinic Secretary) : 사무원, 비서 등의 다양한 책임, FTC의 자료 관리, 직원들의 시간계획관리 등의 일을 한다.

## 2) Detroit 경찰청

### (1) 경찰 위원회(the Board of Police Comissioners)

- ① Detroit 지역사회 시민들로 구성됨
- ② 경찰청을 위한 정책 제정
- ③ 정책활동의 수행, 판단, 절차 등은 경찰청과 부청장의 책임이다.
- ④ 부청장 Dr. James Bannan는 가정문제 상담소를 위한 중요한 참여와 계획을 수립하였다.

### (2) 경찰 지서 (the Police Precinct)

- ① Detroit내에 13개의 지소가 분포
- ② 개별 지서의 직원 유형
  - 지서장 Precinct Command
  - 수사관 Inspector of Investigative Operation Section
  - 순찰관 Inspector of Patrol Section
  - 경찰 공무원 Lieutenant, Sargent and Patrol Car Officers
- ③ 순찰경관들, 형사들 그리고 청소년담당경찰들에 의해서 FTC로 의뢰되었다.

### (3) 911 긴급 서비스(the 911 Emergency Service Operator System)

- ① 조직상 경찰 명령권자가 지휘한다.
- ② 행정상의 지휘에 따라 FTC 서비스 요청에 우선적으로 임하고 있다.
- ③ 순찰 서비스에서 감지하지 못한 사례들에서, 클라이언트의 위기를 감지해

출 것을 FTC에 의뢰하기도 한다.

(4) 경찰의 역할과 책임: 부청장 Dr. James Bannan

- ① 경찰권한을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폭력상황을 감소시켰다.
- ② 체포와 즉결이라는 전통적인 접근을 하였다.
- ③ 상담을 목적으로 가족 또는 개인을 의뢰하였다.
- ④ 경찰이 시민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자원으로써 상담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상담 과정을 촉진시켰다.

## 사. 운영( Operation )

### 1) 가정문제 상담소에 의뢰

(1) 경찰에 의한 즉각적인 의뢰

- ① 가족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뢰가 된다.
- ② 클라이언트가 경찰을 통해 FTC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2) FTC 의뢰양식 제출

- ① 준비조사에서의 의뢰 과정은 연락담당경찰 또는 연구케이스워커가 적절한 케이스를 찾기 위해 의뢰양식을 심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② FTC와 함께 모든 경찰들이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가정문제 상황에서 즉시 의뢰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홍보용으로 FTC 팜플렛을 제작, 사용한다.

### 2) 가정문제 상담소의 치료, 상담

#### ① 치료

- a. 위기 개입과 단기치료를 적절하게 사용
- b. 클라이언트에게 위기상황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
- c.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적인 계획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원조.

d. 위기 시 상황의 통찰 및 사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행동계획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

e. 한번의 면접에서 이루어짐.

f. 사회사업가가 부가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상담 여부는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

g. 처음에는 상담에 응할 의사가 없었던 클라이언트들이 첫번째 면접 이후에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

### ② 전화 상담 (Telephone Counselling)

a. 전화상담은 가정 상담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

b. 1978년 한 해 동안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의 75%가 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c. 전화상담에서도 위기이론이 적용된다.

d. 클라이언트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그 즉시— 혼란과 불안수준이 높은 상태— 치료개입이 필요하다.

e. 전화상담은 워커가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서 직접 면접에 가까운 서비스가 제공된다.

f. 전화 상담은 통제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어 지는 서비스이다.

g. 감정적인 손상은 다른 심리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h. 이야기하는 기회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폭력충동,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살인과 폭력에의 충동을 통제할 기제를 제공한다.

### ③ 접근 서비스 (Outreach service)

a. 의뢰된 많은 클라이언트는 사회사업가의 노력 없이는 서비스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b. 편지와 전화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치료관계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c. 이러한 클라이언트 그룹은 위기절정의 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많이 유발된다.

d. 클라이언트가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이 없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 가족들이 나이 어린 아이 들인 경우에는 차량지원서비스(cab service)를 실시하기도 한다.

#### ④ 경찰-사회사업 가정 방문

a. 클라이언트 접근 및 진단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무소에서의 면접이 부적절 하거나 가족들을 면접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b. 초기 서비스 유형이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c. 현장의 경찰은 사회사업가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시 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개입한다.

d. 직접 FTC에 의뢰하기보다는 의뢰양식을 통해서 의뢰한다.

e. 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FTC의 전화번호를 제공 한다.

f. 폭력은 대개 밤 또는 주말에 발생하므로 담당자인 전화상담 직원이 서비 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3) 경찰-사회사업가의 활동

#### ① 관계의 유지 발전

a. 경찰점호(Roll-call)에서의 사업 홍보

b. 경찰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FTC의 기능 설명

c. 일선 경찰들과 사회사업가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기 위한 노력으로 연 락기능을 발전시킴.

d. 경찰지서를 방문한 사회사업가와 연락담당경찰 및 FTC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과 대화

e. 의뢰신청서 수집 및 의뢰에 필요한 양식과 팜플렛 제공

g. 두 전문직업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그룹 모임에 대한 행정 가들의 배려

이상의 가정폭력 상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경찰사회사업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표로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SSP와 FTC의 비교 분석

분 류	SSP	FTC
실시 시기	1970년	1978년
서비스 초점	초기 개입	위기 상담
기본 원칙	24시간 대인서비스로 c't에게 초기에 개입한다.	C't 의 위기시 신속하게 처리한다.
서비스 종류	위기 개입 개인과 가족 치료	치료: 단기치료, 위기개입, 전화상담 outreach service
운영시간	24 시간 대인서비스	대인서비스 08:30-17:00 전화상담 17:00-03:00

### 3. 사회사업 전문직의 특성과 역할

#### 가. 사회사업의 개념

사회사업은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1972년 전미사회사업가연합회(NASW)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사업을 정의하였다.<sup>4)</sup>

사회사업이란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를 원조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발휘능력을 증진 또는 유지시키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사회사업실천은 "사회사업의 가치들과, 원칙들과 기술들을 다음의 목적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사람들이

4) Armando Morales, Bradford W. Sheafor, Social Work A Profession of Many Faces, Ilyn and Bacon, Inc. 1980.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개인과 가족과 집단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행하며, 지역사회와 집단으로 하여금 사회적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증진하도록 원조하며 관련된 입법과정에 참여한다."

사회사업실천은 "인간발달과 행동에 관한 지식들과 사회제도, 경제제도, 및 문화제도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요구한다."

#### 나. 전문 사회사업의 대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문직의 대두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전문직들은 전문 분화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로부터 태어난다. 그들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승인에 따라 발달하게 되며 사회에서 이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느냐의 여부, 이러한 욕구를 전문직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여부, 그리고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직의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발전하거나 쇠퇴하게 된다. 지난 세기 동안 많은 요인들이 사회사업의 변모에 영향을 주었는데,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이 미국의 사회사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평화의 시기, 인플레이와 공황의 시기, 인구변동과 정제, 대도시 유입의 시기, 그리고 기타 많은 요인들이 사회사업가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 1) 전문 사회사업의 특징

오래 전부터 사회과학자들은 전문직의 성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중의 한연구 방법은 의학, 법학, 성직, 고등교육 등의 전문직을 두고 전문직의 기본요소, 예를들어 전문 분화된 기술과 훈련, 최저급료수준, 전문가 단체의 결성, 전문적 실천을 지도하는 윤리행동강령 등의 기준을 들어 특정의 전문직의 위상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특정의 직업이 전문직이나 비전문직이냐가 가름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다음의 3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는 전문분화된 지식체를 갖추어야만 전문성이 높은 직업으로 인정된다. 몇몇 전문직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론들을 살펴보면 사회사업 전문직의 기초에 해당하는 체계적인 지식이 존재하고 있다. 전문직의 두번째 특성은 사회에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전문적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전문가들만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판단을 내리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극히 잘못된 실천 행위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판단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회사업가는 선택의 자유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조대상자(client)에게 신뢰감을 주고 관계의 활용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 오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원조대상자(client)의 안정감은 바로 전문 사회사업가의 이와같은 전문가적 권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할 소지를 스스로 안고 있으므로 자신들 스스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특성이 있다. 의학 분야에서 의사들의 윤리강령은 고전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사업가들도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을 일찍부터 제정하여 자신들의 전문가로서의 행위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해 왔다.

## 2) 사회사업의 역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이 발전해 온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사업의 발전을 뒤돌아 볼 때 반드시 언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업 혁명의 여파가 각종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던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활동했던 자선사업가들이었다. 이들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무보수로 빈민들을 돕고, 그들의 고충을 상담하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원조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대개 의식있는 중산층의 젊은이들로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었다.

1800년대 초에 이르러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노력이 좀 더 조직화되어 각

지에 부랑인 보호소,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피난의 집, 부도덕한 여성을 위한 피난의 집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조직화된 사회사업 시설의 발전에 대해 당대의 역사가였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든 연령층의, 여러 배경을 지닌 그리고 여러 종파의 미국인들이 결사체를 만들었다. 미국인들은 오락시설, 신학교들, 숙박소, 교회를 세우고, 도서를 보급하는가 하면, 오지에 선교사들하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병원을 설립하고, 감옥과 학교를 세웠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직업으로서의 사회사업이 발전하였다. 미국에서 최초의 유급 사회사업 직위는 미국 위생위원회의 특수구호부였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였다가 후에 공공의 지지를 받게된 특수구호부의 요원들은 남북전쟁 시기에 연합군과 그 가족의 사회적·보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특수구호부는 해체되었고, 따라서 당분간 사회사업가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회사업가들은 그 몇년후인 1863년 매사추세츠 자선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다시 유급직원으로 등장하였다. 자선위원회에서는 특히 지역의 빈곤문제에 대한 조사와 원조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사업의 전문직화에 기여한 또 한가지의 추세는 1877년 미국 버팔로에서 처음 결성된 자선조직협회(COS)이었다. 이미 영국 런던에서 기능하고 있던 협회를 본 따 만든 이 협회에서는 두가지 중요한 일을 수행했는데 그 하나는 빈민을 위한 자원을 발견하는 것과 빈민들이 여러 자선단체로부터 중복하여 구제를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었다. 1983년 로제노(Nathaniel S. Rosenau)는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은 특별히 훈련되고 사명감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1898년 뉴욕 자선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뉴욕 COS의 사무국장인 드바인(Edward T. Devine)의 지도하에 유급 사회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6주간의 여름방학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러다가 교육기간이 1년으로 그리고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사회사업의 전문직화에 기여한 또 다른 흐름으로는 1886년에 시작된 인보관

(지역사회복지관) 운동을 들 수 있다. 영국 런던의 토인비홀을 모델로 하여 뉴욕과 시카고에 인보관을 만들었다. 그 후 15년 동안 약 100개의 인보관이 운영되게 되었다. 인보관 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산층의 의식있는 지식인들이었다. 종교적으로 그들은 기독교 사회개량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었다.

각종 시설내에서의 사회사업 발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05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의 사회사업실천이다. 퇴원환자를 담당했던 외과의사 캐봇(Richard C. Cabot)의 지도하에 캐논(Ida Cannon)은 미국에서 최초의 병원 의료사회사업과를 개설하였다. 물론 이 역시 영국 런던에서 먼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과의사와 같은 정도의 전문적인 직업자료를 갖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의료사회사업가들은 '뜨거운 가슴을 지닌' 지위로부터 의사와 같이 환자의 심리, 생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위로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12년 1년 과정의 의료사회사업 교육과정은 보스톤 사회사업대학에 개설되었다.

사회사업이 직업으로 인정받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던 시기인 1915년에 사회사업의 전문 직업적 위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대학원 교육의 권위자인 플렉스너의 사회사업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평가는 사회사업가들에게 전문화를 향한 커다란 자극으로 기능하였다. 전문직으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사업가 윤리헌장이 마련되었다. 리치먼드(Mary Richmond) 여사는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윤리헌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낮은 사회적 지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1921년에 술회하고 있다. 그에 따라 1923년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케이스 워커를 위한 사회사업가 윤리헌장의 초안이 토론되었다. 또한 사회사업가들의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한편 사회사업의 지적 기반과 기술적 기반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하나로써 1917년 메리 리치먼드(Mary Richmond) 여사에 의해 최초의 사회사업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진단 (Social Diagnosis)이 출간되었다.

1950년 이후 197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회사업은 1955년 전미사회사업가

협회(NASW)의 창설이 시발점이었다. NASW의 회원은 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인정한 사회사업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정되었다. 1964년 현재 88.7%의 회원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였고, 4.1%는 2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었다. 나머지는 기존의 시설과 단체에 몸담고 있던 경력자들이었다.

#### 다. 전문 사회사업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그들의 역할

사회사업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구비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과 사회제도들 간의 관계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증진되거나 유지되거나 또는 종결되어야 할 상황들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2)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리고 달성가능한 목표와 이용가능한 대안들에 관한 탐색을 바탕으로 인간의 복지증진계획을 발전시키거나 실행할 수 있는 능력
- 3) 인간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처능력, 자기개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 4) 사람들에게 자원, 서비스, 및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들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능력
- 5) 가장 취약하고 차별 받는 인구집단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능력
- 6) 사람들에게 자원, 서비스, 및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들의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운영을 증진시키는 능력
- 7)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며 보다 반응적인 새롭고 개선된 서비스/자원/기회제도들을 만드는데 타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들을 제거하는데 타인들과 협동하여 활동하는 능력
- 8) 개입계획의 목적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 9) 실천행동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전문적인 발전과 성장을 끊임없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10) 전문직의 지적 기반에 적절한 지식을 보탬으로써, 그리고 전문직의 윤리와 기준을 지지하고 제고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전문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 1) 사회적인 보호서비스를 계획, 설정, 유지, 평가하며 상담을 제공해준다.
- 2) 사회문제를 실질적이거나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요인으로 파악한다.
- 3) 사회사업가는 사회보호계획과 상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4) 사회사업가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5) 사회보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회사업가는 관련 지방의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관심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6) 자원봉사자와 자발적인 기관들과 함께 사회보호 서비스를 계획한다.
- 7) 사회보호 계획에는 현존하는 욕구와 미래에 있을 욕구를 방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사회사업 관리자는 사회사업가가 예방적일 뿐 아니라 반응적인 관점에서 사회계획을 하도록 한다.
- 9) 사회사업교육은 사회보호계획과 상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0) 자원의 분배도 사회사업가의 임무 중의 하나이다.
- 11) 연령에 따른 분배는 수용될 수 없다.
- 12) 필요하면 사회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 13) 사회사업가의 고용주나 사회사업 관리자는 사회사업가가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라. 한국 사회사업가의 자격요건, 교육, 인력배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6.25 전란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은 전쟁고아, 미망인, 수재민 등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보호 및 구호사업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영세민, 가출아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특히 기아, 미혼모 등을 위한 생활보호 및 입양사업 등이 새로운

5) Peter M. Barclay et al. , " Social Workers Their role & tasks " , Bedford Square Press, 1985.

중요한 사업이 되었으며 1980년대는 장애자복지 및 사회복지관사업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변화되고 그 서비스의 내용도 변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규정이 명시되었으며 1983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있었다. 1983년부터 사회복지사 라고 개칭하였으며, 1960년대까지는 미국식 사회사업교육이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알맞는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의 개정이 나타났다.<sup>6)</sup>

이와같이 사회복지사업이 발전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전문직 사회복지교육의 발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제정에서 규정된 자격기준은 학력과 실무경험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회복지 종사자가 되려면 쉽게 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훈련을 받게 하였다. 비록 중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업 기관에 8개월의 훈련이나 7년 이상의 경험을 지니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주장되어 온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적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당시에 사회복지사의 국가고시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경험을 중요시한 사회복지사를 3종(1,2,3 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1970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학력과 경험이 매우 강화되었는데, 특히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육을 전문교육으로서 매우 중요시하여 이들에게 자격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수준의 사회복지교육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문직업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 이상의 사회복지

6)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9.

지학과 또는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자이다. 그 외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학 또는 일정한 교육 및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1급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은 현재 약 50여개에 이르며, 연간 2,500여명의 졸업생을 내고 있다. 대학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사업 방법론과 사회복지정책의 학풍이 배합되어 있는 실정이다.

### Ⅲ. 경찰사회사업의 대상문제 : 가정폭력

#### 1. 가정폭력의 개념

##### 가. 가정폭력의 개념

폭력행위를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시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사람의 견해는 다른 사람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폭력을 해석하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폭력과 폭력의 해석에 관한 인식은 관계자들의 상황과 경험에 달려있다.<sup>7)</sup>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폭력의 의미는 물리적인 힘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은 뺨을 때리는 것, 압박하고 난폭하게 밀거나 주먹질하는 것, 발로 차는 것, 물건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그리고 목을 조르거나 교살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이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흔히 때리고, 밀치고, 차고, 찌르는 등의 육체적인 학대로 간주되기도 하며, 동시에 이는 성적 또는 심리학적인 학대의 성격도 지닌다. 육체적인 상처는 종종 치명적이다. 초기에 폭력의 위협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며 이는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가속하게 될 것이다. 위협은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한 후에도 나타난다. 피해자는 그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은 사실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 가족과 자녀들의 안정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 나. 가정폭력의 현실태

7) Alan Buorlet, *Police Intervention in Marital Violence*,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1990.

가정폭력은 모든 민족, 인종, 종족, 수입, 세대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다. 폭력이 행해지는 가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땅에서 가장 안심과 안정을 느껴야 할 장소가 위험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가정폭력의 그늘은 삶 전체에 드리워지고, 그들은 영원히 변해버린다. 가정폭력은 몇 천년 동안 부부관계의 일부분이었다. 성인 여성은 다른 곳, 다른 남자에게서보다 자기 집에서 남편의 손에 의해서 성폭력, 구타,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비록 그것들이 사회에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지만, 수백년동안 교정제도 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수천 수만의 명백한 가정폭력의 사례를 다루어 왔다. 지난 15년 동안 정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가정폭력은 대중적인 관심과 대응할 만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98%)이다. 이 수치는 왜 여성에 의한 남성폭력은 소홀히 하고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만을 문제시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은 널리 퍼져있고 치명적이며 복잡하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붕괴시킨다. 폭력의 횡수와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전반의 손실과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희생자(아이들, 피해자, 지역사회)에 대한 구타손실 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학대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손실은 그의 삶자체이다. 알코올남용, 의기소침, 자살과 자살미수, 분노, 정신병리학적 장애, 유산, 건강문제와 무력감을 갖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입는 상처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다. 어머니가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란 대부분의 어린이는 신체적 학대를 알고 또 증거 한다(Sonkin et al.,1985). 이들에게 있어서의 즉각적인 손실은 안정감의 상실이다. 아이들의 행동이 퇴행적이 될 수 있으며 물체나 동물, 형제,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아내나 아이를 구타할 가능성이 높다.(Gelles & Cornell, 1990)

남성은 자기 폭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 그들은 자신의 폭력 사용으로 인해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폭력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감, 분노, 자신감의 상실, 정력과 자제력의 상실을 경험한다. 또 죄책감, 수치심, 치욕과 공포를 느끼며,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인과 자녀를 잃고, 벌금이나 직업, 생명,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Lindsey, 1990)

개인처럼 사회도 집단안정감을 상실하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은 분노와 긴장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숨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폭력을 당한 자와 가한 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세금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 교육, 서비스, 신체적 개선, 문화적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사회기금이 미숙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의료비로 전환된다.

#### 라. 가정폭력의 구분

가정폭력을 자세히 구분해 보면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 학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배우자 학대

가해자나 희생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없다. 때리는 남편들의 다수는 그들의 배우자를 사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 반면, 어떤 이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폭력 사용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부인이 떠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매맞는 아내들은 자신을 때리는 남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단지 때리는 것을 멈추기 원할 뿐이다. 또 다른 이들은 학대자인 남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한다.

가해자의 행동이 희생자, 생존자 또는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맥락에서 가해자를 이해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나타난 대부분의 정보들은 희생자와 생존자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으로부터 구한 것도 있다. 그들은 이 폭력행위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하려 하고 그 기억을 부정하려 하기 때문에 정보들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sup>8)</sup>

#### (1)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가 희망하는 바와 현실 사이의 관계는 매일 거의 조화되지 않는 극도의 행동과 감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들이 희망하는 바는 그들이 실제 행동하는 바와 정반대이다. 이런 부조화를 직면하게 됨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이러한 폭력이 증가됨에 따라 그들의 희망사항은 점차 환상이 되어간다.

가해자는 스스로 불안, 위협, 낮은 자아감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를 떠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애정을 요구하며 배우자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할 정도의 급박, 불안, 강박적이고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 폭력, 애정과 선물의 과도함, 고립, 위기와 혼란의 상황이 혼재됨으로써 생존자들은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알게 된다.

##### ① 질투

가해자는 그의 배우자의 모든 생활에 질투를 느끼고 그녀의 사랑과 충성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녀를 그녀의 모든 지지체계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감시하게 될 것이며 또한 친구를 사귀거나 가족과 계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차단시킬 것이다.

##### ② 잔악성

과도한 행동은 다른 분야로 확대된다. 친절하거나 애정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때면, 그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된다. 폭력을 사용할 때에도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과도해진다. 종종 배우자를 때릴 때에는 무언가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때리고 차고, 배우자가 심한 상처를 입을 때까지 계속된다. 약물을 남용한 경우라면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8) James E. Hendricks, Crisis intervention in criminal justice/social service, Springfield, Ill. : C.C. Thomas, 1991.

### ③ 학대의 세대적인 주기

폭력은 학습된 행동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은 학대자가 되기 쉬우며, 또한 어렸을 때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 학대자가 될 가능성은 더 높다. 게다가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세대적인 폭력의 전수가능성은 다시 한번 높아진다.(Bowker, 1988 ; Straus et al., 1981)

### ④ 매력적이고 잘 속이는 성격

많은 가해자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품위가 있으며 조용하고 절제력이 있다. 그들은 평소에 이런 성격을 나타내 줌으로써,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감정의 회피

가해자들은 자신의 주요한 감정을 잘 알지 못한다. 이는 남자에게 분노를 제외한 다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감정표출은 그의 무능력 과 결부된다. 분노는 규범적인 감정이기 에 가해자는 그의 모든 감정을 분노로써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Ewing et al., 1984)

가끔, 특히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직후에 죄의식, 두려움, 창피함 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심지어 울기까지 한다. 그러나 곧 배우자를 억압하며 이전의 대응방법으로 되돌아간다.

## (2) 학대의 이유 - 역동성

남성 폭력은 모방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학습된 행동이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행동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것과 폭력 직후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해자에게 주는 메시지들이다.

폭력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남성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사용한다. 폭력이 그의 감정을 가려주고 억눌러 줄 뿐이지만, 그는 폭력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고정시켜준다고 믿고 있다. 폭력은 또한 당한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폭력은 남자의 고통에 대한—우회적이든 숨은 것이든—

반응이다. 때리는 남자들은 분노 외에는 다른 감정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 분노는 남자들이 느끼기 쉬운 감정으로써 상처, 두려움, 고통, 상실 등이 드러날 때면 언제든지 분노하게 된다. 남자들이 때리는 실제적인 이유는 없다. 단지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인식이 있을 때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상처는 분노로 되고 또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이성적으로 격렬하게 폭발한다. 그는 사고하는 것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조절하며 때릴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폭력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인식이 남자가 때리는 이유라 할 수 있겠다.

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a. 희생자화 시키기 : 가해자는 어떤 의미에서 어린 시절의 피해받은 경험에 갇혀있다. 어린 시절의 감정적 육체적인 폭력으로 ‘어른이 되면 폭력을 통해서 자신을 통제한다’는 인상이 계속 남은 것이다.

b. 초기의 관계; 공허 메꾸기 : 어린 시절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문제들은 치유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깊게 자리잡는다. 이런 상처받은 남자가 초기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는 배우자가 그의 공허함을 메꾸어 주고 상처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그에게 더욱 상처를 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는 원래 상처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숨기려 함으로써 더욱 고통을 받으며, 그녀가 그의 상처를 고쳐주지 않는 것에도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생존자가 그를 떠나려 하면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자살을 하게 되거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종종 그녀의 친구나 가족을 살인하게 된다.

c. 감정의 회피 : 어떤 남자들은 화내기를 즐긴다. 감정적으로 공허한 사람에게서는 분노가 편하게 느껴진다. 다른 이들이 화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화내는 것이 익숙한 감정이다. 가해자는 화를 내면서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가해자는 두려움, 슬픔, 심지어는 기쁨도 분노로 바꾸어 버린다. 감정 표현을 지지 받지 못했던 그의 생활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감정을 부정하게 된

생활은 상처가 되고 또 이는 분노로 바뀌며 또한 격분하게 된다.

d. 고립화 : 때리는 남자들은 정서적, 육체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박적이고 폭력적이며 무질서하다. 그는 다중적이고 비실제적인 기대를 하는데, 요구의 대부분은 상당한 관심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혼란을 다루어나간다.

실제적으로 그는 다정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과 별로 교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의심하고 숙고한다.

e. 두려움과 부적절함 : 가해자들은 전형적으로 위협과 스스로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Ewing et al., 1984) 이런 감정들이 강해짐에 따라 가해자는 더욱 분노, 격분하여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폭력을 사용한 뒤에는 수치심, 죄의식, 두려움 그리고 부적절함이 다시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다시 그 행동유형이 반복되는 것이다. 상처는 분노로, 분노는 격분으로, 격분은 결국에 폭력으로 바뀐다.

## ② 어린 시절

a. 그는 폭력적인 가정의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학대했을 것이며 아마 그 자신도 맞았었거나 잘못 키워졌을 것이다.

b. 최소한 가해자는 아마 정서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c. 그의 가정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이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했을 것이다.

d.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는 집안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며 필요한 것이라고 배웠다.

## ③ 여성에 대한 믿음

a.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같다.

b. 여성을 소유하고 있음은 힘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c. 여성과 관계함으로써 걱정, 불안, 외로움이 감소될 것이라고 그는 추측하고 있다.

d.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 그의 재산, 그의 결혼, 배우자의 수입, 그의 집, 그의 차, 이 모두는 그의 소유물이며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잃는다면 그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e. 배우자를 그의 곁에 계속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녀를 통제해야 한다.

④ 그의 두려움

a. 그녀가 그를 포기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말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생각하는 안정, 힘 그리고 곁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위협한다.

b.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그는 그의 자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c. 그는 경제적으로 그녀에게 의존하게 될 지도 모르며 아무런 대안이 없다. 그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를 통제해야만 한다.

d. 그가 비밀스럽게 믿고 있는, 그 자신이 부적절한 실패자라는 것을 그녀가 폭로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3) 피해자의 특징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듯이, 어떤 여성도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받을 것 같은 여성이란 없다. 그러나 매맞는 아내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① 낮은 자아감

매맞는 아내들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학대자는 자주 그녀를 무능력하고 혼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녀는 더욱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 여성들은 종종 배우자나 어머니로써의 성공과 실패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집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아감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매맞는 여성들은 남편의 행동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사회에서는 그녀가 변화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도 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② 전통적인 믿음

전형적으로 매맞는 여성은 남녀 관계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 가정을 유지하며 관계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원해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든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편의 계속적인 감시하에서만 가능하며 그녀는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역으로 자발적이든지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래서이든지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중되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 어떤 매맞는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정의 수입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를 남편이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출내역도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며, 남편이 직접 지불하기도 한다. 그녀는 가족 전체가 심지어는 재정적으로도 일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가정의 우두머리로 생각한다.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가끔 돈을 숨겨두기도 하는데, 이 비밀스러운 돈은 그녀가 떠나든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녀가 생활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 ③ 정신적이고 생리적인 측면의 스트레스와 불평

매맞는 여성들은 피로, 휴식부족, 수면부족, 두통 등의 가벼운 병을 호소한다. 그들은 우울증과 불안을 불평하며 대개 의심이 많다. 과도하게 간섭하는 남편으로부터 여러달 동안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매질을 피하게 해주며 그들의 삶에서 가해자를 통제하도록 인식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 ④ 폭력 축소시키기

매맞는 여성들은 그들이 당한 폭력의 양과 정도를 축소시켜 말하는 경향이 있다.

#### ⑤ 그녀 자신이 벌 받을만 하다고 믿고있음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만약 네가 맞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 좀 해라. 내가 너를 때리도록 만들지 말아라"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벌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믿고 있는데, 가해자는 그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그의 폭력을 부모님의 가르침과 융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⑥ 어린 시절

a.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질하는 집에서 자랐을 것이며, 이를 자연스럽다거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b. 그녀가 어린 시절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맞았을수록 집에 머물러 있을 가

능성은 높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를 때리는 것은 괜찮다고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것이다.

c. 그녀 또는 그녀의 자매 중 한사람은 아동학대의 생존자일 것이다.

⑦ 경제적인 의존

a. 그녀는 경제적으로 그에게 의존을 하고 있어 실제로 아무런 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과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학대받는 것을 견디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b. 오늘날의 경제적인 상황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녀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녀는 종종 가계를 유지할 만한 기술이 없으며 이들을 원조해 주는 국가보조는 매우 적기때문에 대안이 되지 않는다. 만약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 분리된 가정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 대개 가해자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가해자는 계속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법원 비용이 소요되고, 자녀나 집, 차 등 그녀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

c. 그가 그들의 모든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수표 등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d. 만약 그녀가 장애인이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면 그는 의료비용이 지불되는 유일한 건강보험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녀들 보기, 은행과산, 시설입소 또는 그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죽는 것 등을 두려워한다.

e.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그의 연금이나 다른 퇴직금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내쫓아 집없이 가난한 거지가 되어, 주정부에 의해 시설에 들어가게 되거나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

⑧ 고립화

a. 그는 종종 그녀의 유일한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체계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친구나 가족들은 그의 협박, 적의, 또는 폭력을 싫어하여 그녀로부터 모두 멀어졌기 때문이다.

b. 이런 고립화로 그녀는 그의 전능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그녀의 느낌이나

현실감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녀들은 집 안에서 보고 배운 것을 밖에 나가 그대로 행한다.

c. 생존자나 학대자 모두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서비스기관을 알지 못한다. 이는 가정내부의 일은 가정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회서비스기관이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d. 만약 그녀가 집을 나가면 그는 그녀, 자녀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누구에게라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이에게 해를 주느니 자신이 매를 맞는게 낫다고 생각하여 잠재적인 조력자들과 관계를 끊게 된다.

#### (4) 구타 방법

일반적으로 구타의 이유를 가해자인 남편은 아내의 말대꾸 아니면 특별한 이유없이, 그리고 살림을 못한다거나 부모님과 의 갈등을 드는 반면, 피해자인 아내는 난폭한 성격, 주벽, 외도, 의처증 그리고 이유 없는 습관을 들고 있다. 이는 아직도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과 남편의 권위적인 의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구타당할 때 무조건 아내가 순응하고 빌어도 화가 풀릴 때까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구타를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아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아내 혼자 노력해서 해결될 수 없는 남편의 정신적 결함이나 성격상의 문제와 사회적 통념이 구타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타 방법은 손이나 발 등 닥치는 대로 때리는 경우보다 갈수록 칼 등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점점 잔인하고 위협적인 방법으로써 생명과 관계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있다. 이는 개인적인 방어의 차원을 넘어선 상태이므로 사회적,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습관적인 구타를 당할수록 남편의 구타에 대한 태도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거나 장기적으로 구타가 습관화되면서 혼인기간이 더 길어지고 나이가 들기 전에, 아니면 자녀들이 더이상 맞고 살지 말고 헤어지라고 하여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구타후 아내한테 잘못하였다고 자주 비는 경우일수록 반복적인 구타가 자행되고, 아이들까지 구타하거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구타후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할 때 더욱 정이 떨어

저 나중에는 남편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증이 생기며 주위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면서 결국에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면 배우자 학대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2) 노인 학대

노인 학대의 중요한 3가지 유형은 유기, 방치, 착취이다.

첫째, 심리적, 신체적인 유기이다. 신체적인 유기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정신적인 유기에는 수치, 위협, 헐박이나 다른 언어적인 책략 등을 이용하여 공포, 고통, 빈곤 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노인의 방치는 음식, 의료와 위생적인 보호, 인간적인 교제, 의복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을 노인들로부터 숨겨놓았을 때를 말한다.

셋째, 착취는 노인들의 돈이나 다른 재산이 비합법적으로 잘못 사용되거나 활용될 때 나타난다.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 문화적 그리고 일반 자연환경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학대에 기여하는 이들 환경 특징 중의 하나는 넓게 퍼져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와 연령주의(agesim)이다. 편견과 부정적인 고정관념(stereotype)의 감정을 가짐으로써 노인들은 남에게 의지하고, 아프고, 단순하며 화를 잘 내고 우리의 존경과 주의를 더이상 받을 가치가 없는 비생산적인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고립과 무력감은 증가되며 더욱 상처입기 쉬운 상태가 된다.

1980년대 동안 문제가 좀 더 넓게 조사되고 공식화된 이후, 희생자들은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반응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무에 있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경찰, 목사, 간호사, 가정 고용인, 의사,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희생을 다루는데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인학대를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노

인학대의 희생자와 잠재적인 희생자들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인구에서 노인의 수나 비율은 다음 5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인구통계학은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85세 이상의 개인 집단이 우리 인구 중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매우 늙은 사람들로, 장기간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은 증가하는 노인 집단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적인 증가도 뒤따라야 함을 암시한다.

## 2.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

### 가. 통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 지부에서 5년간 상담한 내용을 보면, 부부문제에 상담한 건수는 1차년 대에 662건, 2차년도에는 628건, 3차년도에는 629건, 4차년도에는 636건, 5차년도에는 6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부 문제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가정 어디까지 왔나?’,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전주지부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 )

〈표 2〉 부부문제 상담원인

상담원인	남 (%)	여 (%)
부 정 행 위	38 ( 28.8 )	231 ( 42.8 )
악 의 유 기	44 ( 33.3 )	24 ( 4.4 )
배 우 자 학 대	11 ( 8.3 )	163 ( 30.2 )
존 속 학 대		
3년이상 생사 불명		
기 타	34 (25.8)	118 (21.9)

이 중 남편의 구타로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전주지부를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남편의 외도나 의처증, 주벽, 고부 갈등, 난폭한 성격 등의 경우 구타를 동반하므로 실제의 경우는 위 표(1992.11~1993.11)에 나타난 배우자의 학대 30.

2%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2월 1일에서 1995년 1월 31일까지의 '전주 여성의 전화'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는 20% 증가했다.

〈표 3〉 전주 여성의 전화 상담내용

상담 내용	구타	외도	부부 갈등	시집 갈등	성 폭력	미혼여성 문제	법률 문제	기타	계
상담건	108	115	134	25	26	73	50	86	617
백분율(%)	17.5	18.8	21.7	4.0	4.2	11.8	8.1	13.9	100

구타는 108건으로 전체상담의 17.5%를 차지했으며, 이 중 결혼 초부터 구타한 경우는 26.6%를 차지한다. 구타의 정도를 보면 코뼈가 부러지고 척추뼈에 금이 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또한 이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진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구타남편의 20%가 알콜중독자이며 33.3%가 칼 등의 흉기를 휘두르고 친정 식구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아이들까지 구타하기도 한다.

외도(115건)의 18.8%가 구타를 동반하며 이것까지 포함하면 구타는 전체 상담의 36.3%를 차지한다. 외도는 많은 남성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죄의식없이 하고 있고, 그 상대는 미혼여성, 유부녀, 매춘여성, 과부등 다양하다.

부부갈등(134건, 21.7%)의 경우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것 같다.

부부 갈등을 겪는 사례 중 폭언, 의처증이 심하고 구타가 있기도 하나(25%) 위에서 살펴본 구타, 외도처럼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구타는 아니지만 부부갈등을 겪으면서도 구타는 일어나고 있다. 구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인 구타나 외도, 부부갈등이 전체 상담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부분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나. 가정폭력의 사례

다음은 전주여성의 전화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발췌한 ‘배우자 학대’에 관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형적인 특성과 가정 환경이 잘 나타나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가정폭력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김 여인은 1955년 24세의 나이에 두살 위인 이씨와 결혼하였다. 남편의 구타 행위는 결혼 1개월 후부터 시작되었다. 결혼 직후는 시골 친정에서 살았는데 결혼한 1개월만에 남편의 고향 어른들에게 인사 드리러 가던 날 남편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두번 얻어맞았는데, 그 이유는 김여인이 처녀시절 취미로 모아둔 예쁜 지갑, 손수건 등이 조금 있었는데, 남편은 고향 어른들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갖고 가자고 하여 다른 것이 어땠겠냐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렇듯 처음 매를 맞게 된 것이다. 당시 김여인은 친정에 임시로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김여인은 친정 식구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꼭 참았다. 더욱이 친정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므로 충격을 받으실까봐 남편의 말대로 행하였다. 가는 차안에서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많이 아팠느냐고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며 다시 서로가 그러지 말자고 했다. 그때서야 김여인은 어느정도 안심하고 남편의 행동에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고, 자신에게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김여인의 시아버지는 시골의 고급 공무원을 지낸 분으로서 그역시 심한 아내 구타자였고 자녀 구타자였다. 시아버지는 22세때 중매로 시어머니와 결혼하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첩이 있어 딸을 하나두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결혼 초부터 몹시 구타하였는데 헛간에 끌고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삽이나 몽둥이 등 닥치는 대로 흥기를 들고 등과 허리를 마구 구타하곤했다. 또는 머리카락을 잡아 땅바닥에 짓찧기도 하고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구타하였다. 아이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발로 허리를 차곤 하였는데 이럴때 아이들이 울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낚아채어 아이들까지 얹어놓고 발로 마구 짓이겼다. 김여인 남편 이씨가 한번은 구타를 피하며 도망가려다 인두 자루로 맞아서 지금도 그 흥

터가 이마에 남아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구타한후 멍이 들거나 살이 터지면 계란을 갖다 문질러 주고 살이 터진 곳에 생고기를 붙이라고 갖다 대주기도 했다. 시아버지는 첩을 셋씩이나 거느렸는데 본처 자식과 함께 19남매를 두었다.

셋째 첩은 삼남매를 낳고 살았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절구대로 몹시 구타당하던 날 첩의 친정 오빠가 와서 데려간 후 도망가 버렸다. 나머지 두 첩은 시아버지에게 맞아서 골병이 들어 시아버지보다 먼저 62-3세를 전후로 일찍 죽었다고 셋째 첩이 말하고 있다.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는 아내 구타자와 자녀 구타자인 사람이 많은데 그 중 김여인 시숙의 아내는 매에 못 이겨 자살하기까지 했다. 큰 시숙의 아내, 즉 김여인의 동서는 16세 때 24세의 시숙과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33년간을 시숙으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이나 발길질 등으로 구타당하며 살아왔다. 김여인 남편의 가정은 폭력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자들이 많다. 남편의 할아버지를 1대로 보고 아버지 형제 2대, 남편의 형제 3대, 그리고 그 자녀들이 4대로 폭력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폭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결혼한 남자들 21명 중 19명(94.5%)이 전형적인 아내 구타자였으며 그 중에는 정신병을 앓은 사람, 폭력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각기 2명씩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결혼한 여자들은 10명이었는데 그 중 8명(80%)이 구타당하며 사는 여인이었다.

김여인의 남편은 이런 폭력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해 왔다. 김여인 남편 이씨는 현재 55세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본처의 소생으로 5남매의 셋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첩의 몸에서 태어난 형들이 있어 귀여움이나 칭찬은 못듣고 자랐다. 다른 형제들보다 눈치가 빨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할 때는 잘 도망 다녀 다른 형제들보다 덜 맞고 자랐다. 해방 후 19세때 서울에 올라와 명문 대학의 공대를 무난히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씨는 허세와 겉치레를 너무 좋아해서 집을 장식하거나 자기 옷 등은 최고품으로 쓰고 다니며, 어디서나 자신이 최고의 대우를 받기 바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평하기 좋아한다. 가족들과 서로 나누는 이야기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또,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어서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씨의 기

분을 맞추기가 힘들다. 완전히 이중심리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아버지의 행동이나 말에 아무도 기대를 걸거나 신임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때로 가정을 위해서는 최고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며, 이 때문에 그들을 구타한다고 말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직장 상사 등 윗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고 아부를 잘하면서 동료와는 아무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고 주로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이 전혀 없다.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을 해고시키는 역할도 도맡아 하면서 그것을 능력으로 자랑한다. 이씨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돈밖에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한 취미가 없다. 주말이면 젊은 여자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면서 거의 집을 비운다. 남편은 평소에 여자라는 것은 집에서 아이나 놓고 집안 살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자와 바가지는 밖에 놓으면 버린다는 속담을 믿고 있어 딸자식 공부는 적당히 시켜서 시집만 잘 가면 그만 이라고 하면서 딸보다 아들 성적이 못하면 집안 꼴 잘되어 간다고 하며 아들을 때리기도 했다.

김여인은 아버지가 42세 어머니가 38세때 오빠들과의 나이가 14-15년씩 차이가 나는 가운데 고명딸로 태어났다. 시골 국민학교 선생을 하셨던 아버지가 김여인 3세때 돌아가셔서 엄한 오빠들 밑에서 어머니의 온갖 보살핌과 사랑속에 곱게 자랐다.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늦게 들어갔지만 영리해서 계속 월반을 하여 사범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 큰 오빠는 공무원이었고, 둘째 오빠는 사진관을 경영하였으며 막내 오빠는 중학교 선생이었다. 김여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금슬이 너무 좋아서 동네나 일가친척들에게 소문이 나있을 정도였다. 김여인은 어머니와 함께 큰오빠댁에서 성장했는데 전체적인 가정 분위기가 온화하였다. 특히 오빠가 화초와 음악을 좋아하고, 율케 언니도 그래서 김여인은 가정은 의례껏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조카들과 나이차이가 얼마 안되서 가끔 남자 조카들과 율케언니 때문에 눈치를 보았지만 어머니와 오빠는 막내로 얻은 딸자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래서 조카들과 율케언니의 시기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여인은 21세에 사범학

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친정 어머니와 오빠들이 이제는 학교공부를 다 했으니까 집에서 몇 년 살림살이 잘 배우다가 가문 좋은 집으로 시집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시댁 어른들에게 사랑 받고, 남편 잘 섬기는 것이 여자팔자로는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혼하기 일년전 23세때 학교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민학교 교편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때 오빠와 어머니는 못마땅해서 극구 반대하였는데 그 당시는 여선생이 부족해서 주위에서까지 권유하니 할 수 없이 반승낙을 해주었다. 김여인은 열심히 교편생활을 하였는데 그때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냈던 시절이 가장 보람있는 시기였다. 그 당시의 희망으로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암전한 색시감이라며 좋은 가정으로 결혼하라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언니나 여동생이 없어 조금은 외로운 가운데 지냈지만 학교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이 좋아서 늘 함께 모여 놀아서 비교적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지내던 친구들이 한 둘씩 결혼하자 김여인도 어머니와 오빠의 말처럼 가문 있고 학벌 좋고, 직장 튼튼한 신랑감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잘 키워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기를 잘 키워준 어머니와 오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는 어머니와 오빠의 마음에 들면 김여인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간 가정에서 어머니와 올케 언니에게서 배운 대로 시댁과 남편을 잘 섬기고 살림 잘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김여인은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 비교적 갖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오빠들이 도시에 나갔다가 사다주는 선물인 예쁜 지갑, 핀, 손수건 등을 취미로 모아두어 김여인은 방을 예쁘게 장식해 놓고 지냈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성장과정에서 김여인은 현모양처의 전통적인 한국여인의 가치관을 몸에 익히게 되었다.

김여인이 교편잡고 있던 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고향후배라고 김여인에게 남편을 중매하였다. 친정 오빠들과 어머니는 신랑감이 고급 공무원 집의 둘째 아들인데다가 신랑감이 동경까지 가서 공부했고, 더욱 직장까지 튼튼히 보장되어 있는 흔치 자리였으므로 무조건 호의를 보였다. 친정 어머니는 늘 어머니 살았을 때 시집가야 한다고 하며 걱정하시는 입장이셨으므로 아무런 의심없이 맞선을 본지 1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김여인의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예의 바르고,

말이 없고 침착해 보였고 온순하기까지 한 모습이었다. 맞선보고 한 두번 만나는 동안 남편이 김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정중했고 사리가 깊은 사람으로 보였다. 남편은 인물도 잘 생겨서 김여인의 마음에도 들었다. 그야말로 그만한 혼처가 없었기에 김여인은 쉽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결혼한지 2개월 만에 친정 집을 나와 ○○시에서 시어머니, 막내시누이와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결혼 생활 4개월만에 첫아이를 가졌다. 이 무렵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든지 친구 집에 일이 생겼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달에 두서너 번씩 외박을 했다. 그래도 김여인은 남편에게 그 이유는 묻지 않고, 남편을 믿었을 뿐이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가정생활에 재미를 붙이도록 식사며, 요리며, 집안 가꾸기를 열심히 했다. 남편이 외박하는 날이면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왠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김여인에게 그저 다 이해하고 참고 지내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무렵 시누이로부터 남편이 여관집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여인은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물었더니 대뜸 ‘계집년이 강짜가 심하다’고 하면서 김여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짓쪼여 댔다. 김여인은 그런 이야길 듣고 스스로 소화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좁다고 생각되어 다시는 남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그런 자신의 행위가 남편의 매를 자초한 결과가 되었다는 느낌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다 그런데 아내가 그것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김여인을 타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타를 신혼생활 동안, 이렇다할 특별한 이유없이 한달에 한두번씩 당했다. 결국 1957년 경에는 남편의 구타로 인해 김여인은 7개월 된 태아를 사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떤 여자가 찾아와 김여인 남편의 정부라고 하며 용서를 빌면서 자기가 멀리 떠나려고 하니, 차비를 도와 달라고 사정했다. 김여인은 시집을 때 가지고 왔던 돈을 얼마정도 그 여자에게 주었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낮에 들어오더니 ‘네년이 얼마나 잘났기에 남편 바깥일에 참견이냐! 이런 년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하며 갖은 폭언을 쓰면서 김여인의 배를 마구 차고 빙판 마당에 쓰러뜨린 후, 김여인을 나무절구대로 마구 때렸다. 이런 상

황에서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으며, 나중에 병원으로 실려가 하루만에 죽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가 사산된 책임을 김여인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김여인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참을성이 없고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졌고 어떻게 하면 남편의 나쁜 습관을 고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바램도 가져보았다. 그래서 김여인은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온갖 보살핌에 신경을 다 썼다. 세숫물을 받쳐 주었고 심지어 발을 씻겨준다든지, 손톱 발톱까지 깎아 주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큰소리 안나게 하고 살아야 친정어머니 말씀처럼 일부종사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여인의 건강은 펌프 물도 길어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나 남편의 구타행위는 점점 날이 갈수록 잔인해져서, 어떤 때는 약탕관을 깨서 등을 찌르며 때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놔서 과마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 또 연탄집게로 심하게 두들겨대어 온 몸이 멍투성이었고 아이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술병, 몽둥이, 가구, 골프채 등 닥치는 대로 손에 들고 구타했다. 김여인은 병원치료도 가끔 받으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김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사의 질문에 남편이 거의 대답을 하곤 했다. 김여인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의사가 왜 다쳤느냐는 질문에 그저 넘어졌다거나 물건이 선반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등의 정도로 얼버무려 대답하기도 했다. 또 남편은 의사와 간호원 앞에서는 온갖 친절과 자상한 태도를 다 보이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큰 걱정을 하는 척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돌아와서는 치료비가 비싸다는 등 의사를 욕하고 돈이 아깝다고 하며 이 삼일 정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는 동네 약방에서 자기 손으로 약을 조금씩 사다 주었다. 그러나, 남편의 구타는 점점 심하여 과도를 목에다 대고 ‘네까진년 죽이기는 식은 죽 먹기야’라고 헐박하는가하면 만약 도망가거나 하면 어디가든지 찾아내어 죽여버리겠다고 까지 한 적도 있다. 이러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김여인은 정신이 혼미해졌고 헛소리를 지르고, 헛것이 보이기까지 했다. T.V 시청료나 신문 대금을 받으러 오는 남자만 대해서도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공포심에 떨어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가다보니 자연 물도 삼킬 수가 없었고, 식

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으며 때로는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자살을 하고픈 생각도 들었다. 결국, 1978년에는 이러한 증상으로 모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때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김여인이 본래부터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소심해서 그렇다고 하며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구타를 하는 이유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어찌다 얘기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경우, 반찬이 입맛에 안맞는다고, 방이 따뜻하지 않다고, 바지주름이 잘못 잡혔다고, 아이들이 혹시 병이라도 나면 잘돌보지 않는다고, 또 생활비를 요구하는 경우 등등이었다. 남편은 과음을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술을 먹고 와서는 더욱 트집거리를 찾아내서 구타하곤 하였다. 그러나 김여인이 더욱 모멸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남편이 구타 후에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김여인을 붙들고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먹을 것, 속치마, 잠옷, 심지어 팬티까지 사들고 들어와서는 다정스럽게 대해 주기도 하며 지난 일들은 다 잊으라고 하며 말문을 막기도 했다. 시누이는 남편이 김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까지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김여인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서 그런 순간이 오래갔으면 하는 바람이 일었다. 그러다가도 남편이 구타를 할 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싶어 악마처럼 생각되어 이혼을 해야겠다는 각오도 몇 번씩 했지만, 그 용기는 사실 잠시뿐이었다. 남편의 구타가 신혼초기에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져서 결혼 7년후에는 구타 횟수가 한달에 5-6번으로 늘어났다. 남편은 한번 구타하기 시작하면 보통 자신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이삼십 분씩 구타를 계속했다. 이렇게 남편은 김여인을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구타했다. 또한 남편은 김여인에게 구타 뿐 아니라 일체의 금전 사용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생활비 중에서도 돈이 큰 금액은 남편이 직접 지불하고 적은 돈, 예를 들면 반찬 값 같은 식료품과 일용품 등은 하나 하나 품목을 정해줘서 지시하는 대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김여인은 단돈 백원의 융통성도 가질 수 없었다. 이렇듯 김여인은 29년동안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가정생활용품을 선택해서 사보거나 갖고 싶은 것을 단 한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남편은 자녀들도 구타하였는데, 5남매가 모두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맞으면서 성장했다. 자녀들을 구타하는 이유도 역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했다. 자녀들을 때리는 정도는 따귀를 몇 차례씩 때렸으나 횡수가 심할 때는 한 달에 3-4회나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모두 아무 소리도 못내고 조용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를 펴지 못하고 성장했다. 큰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김여인에게 도망가서 살자고 제의하기도 했지만 김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자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김여인의 손길을 더 필요로 했지만 세상 만사가 귀찮아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헤어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너하나 참고 살면 만사가 편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자신을 비유해서 자기가 그 당시 이혼했다고 해도 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이 다 여자들 팔자다’ 라고 하였다. 실제 김여인 자신도 자신의 희생으로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길이 자기가 마지막 할 일이라고 믿기는 했다. 그런데 만일 자식을 두고 나가거나 죽는다면 자녀들은 모두 불량아가 될 것이 뻔했다. 김여인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 삶의 의미도 상실했다. 김여인이 50세 되던 해 김여인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친정어머니가 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친정 어머니가 연로하시기도 했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보름정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 뒤 동서가 자살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곧 이런 악몽같은 생활을 청산해야 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다. 우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가정내 가혹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언명들

우리나라에서 가정내의 가혹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언명들과 그 언어들이 사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 우리나라 가정폭력 관련 언명들

가정내 가혹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언명들	용어 사용의 상황적 배경
1.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때려야 제 맛이 난다.	주체인 남자가 폭행을 가한 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때 사용
2. 미운 자식 떡 하나, 예쁜자식 매 하나 더 준다.	자녀의 차별, 교육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정당화
3. 사랑의 때	학교 내에서의 폭력: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침해, 때를 맞고 자란 경우에는 때릴 가능성이 높다. 사랑이라는 말의 모호성, 가정 내에서의 폭력도 때 맞는 아이를 통해 폭력의 재생산이 가능성이 크다.
4. 내 혼: 거안제미(舉案齊眉) 여필종부(女必從夫)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밥 먹는 위치의 변경, 남자는 독상에서, 여자는 따로 먹거나 잔밥 처리. 가정 내 의사결정권 남편의 독점, 여성을 비하하고 폭력까지도 정당화. 부모, 자식, 남편을 따르라.-문제요인발생가능 1.질투-남편의 외도에 대한 부인의 정당한 항의권 묵살 2. 아들을 못 낳는 것-아들,딸의 낳음에 가해지는 여성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 일방적인 희생강요
5.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참견인가!	아동학대의 정당성 주장,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본다. 극한 경우에 법률의 개입이 필요, 부모로부터 폭력이 사회화될 가능성이 높다.
6. 소자(小子)	우리 언어 사용 문화상 위계질서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은연중에 권위를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7. 장님 3년,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종과 같은 위치, 여성의 권리와 인격의 몰인정
8.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의 가사에 대한 자기 주장을 억압, 문화적 지배 이데올로기 내재, 실제 가사의 결정권은 남자가 독점. 가정 내 여성의 정보 차단이 남자 외도 정당화의 논리 가능성 제공
9.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성들의 가정내 대화 부재, 대화의 통로 발견시 집중 활용, 짧은 시간내 많은 정보 교환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
10.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가정에서의 약점이 바깥에서도 드러난다는 것, 여성에 대한 편견.
11.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존 여비의 사상, "이왕이면 다홍치마",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난다. 처와 처가의 비하
13. 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	여자의 주체성 상실, 발언권이 없고 상황을 팔자소관으로 체념
14. 큰 딸은 살림밧친	장녀의 희생 강요

## IV.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의 실제

###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반응의 변화

#### 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반응의 변화—미국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자이다. 경찰이 초기에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전개되는 교정제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중앙선을 넘나드는 운전자를 목격한 경찰은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가 음주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경찰에게는 몇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첫째는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교정과정에서 제외된다. 둘째로 경찰이 운전자에게 부주의한 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교정제도와 제한된 접촉을 갖게 된다. 세번째로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약물영향하에서의 운전)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법정에 서게 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관의 초기반응에 따라 교정제도의 개입수준은 달라지게 된다.

이 예와 동일한 경우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경찰의 반응이다. 경찰은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 첫번째로 반응하는 기관이다. 실상 경찰은 이러한 종류의 신고전화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의 15-40%가 가정문제로 인한 것이다. 애틀랜타에서는 야간에 걸려오는 신고전화의 60%가 가정문제로 인한 것이다. 가정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치명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정문제에 있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들어 헤셀과 헛친슨은, 가정문제관련 전화에 있어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어떤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75%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Hirschel and Hutchinson, 1987) 분명히 폭력이 개입된 이러한 가정문제의 경우에 경찰의 결정은 관련

자들이 교정제도에 관여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

가정문제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은 법집행기관의 공식, 비공식 정책을 반영한다. 지난 30여년간 이러한 정책은 급변해 왔다. 가정문제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3단계를 거쳐 변해 왔는데, 제1단계(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전통적 반응단계이고, 제2단계(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봉사단계이며, 제3단계(1980년대)는 체포단계이다. 각 단계마다의 조사연구와 정책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전통적인 경찰의 반응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가정문제 전화신고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상황을 ‘진정(cool)’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가정문제에 외부의 기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철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가정문제는 관련당사자들에 의해 가장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찰의 반응은 ‘무개입주의(noninvolvement)’라고 지칭할 수 있다.

#### a. 조사연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가정폭력은 미국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실상 전형적인 가족은 TV드라마에서 그려내고 있는 중산층가정의 모습이었다. 이들 드라마에서는 중산층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경찰의 개입없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에 연구자들은 미국가정의 어두운 측면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가정폭력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가정폭력이 모든 인종, 사회계층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 가정내에서의 폭력은 유사 이래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주의적 전통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 권력과 권위를 행사해 왔다. 2,000여년의 서구 역사를 통해 사회에서는 아내를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왔다. 미국에서도 1871년 두개의 주에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는 법을 무효화할 때까지 아내구타라는 ‘고대로부터의 특권’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 이후 모든 주에서 아내 구타에 관한 법을 개정했지만, 가부장주의에 담긴 태도와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이 발견하기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가정문제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사회전반의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었다. 즉 경찰의 개입은 남녀관계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찰의 개입이 1970년대까지 무개입주의였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경찰은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의 임무는 상황을 진정시켜 관련 가족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직 경찰에 대한 면담조사결과 경찰들은 가정내폭력을 ‘진정한’ 경찰의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가정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된다. 경찰은 가정내폭력을 남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가정내폭력을 가정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찰에 의해서 묵과되었다. 덧붙여 경찰조직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것은 또한 경찰이 가정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경찰관들의 태도를 재강화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자,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다. 연구자들은 경찰이 가정폭력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체포하라’는 내용 이상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배경에는 가정문제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모호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경찰은 ‘법률 집행자(law enforcers)’로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치안유지자(peacekeepers)’로서 개입할 것인가? 이러한 모호성으로 가정문제를 처리하는 경찰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주어졌다. 그들을 지도할 훈련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찰들은 가족관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의존하여 일을 처리했다. 대다수의 경찰들이 남성이었고 그들은 가정이란 남성이 다스리는 성(城)이라는 전통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 b. 정책 집행

1966년 이전에는 가정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경찰서는 미국 내에 한군데도 없었다. 물론 몇몇 경찰서에는 가정폭력상황에 관한 정책과 지침들이 문서화되어 있기는 했다. 그 결과 경찰관들은 경력 있는 선배경찰로부터 이러한 가정문제신고전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근무에 임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전통적인 반응이 선배경찰로부터 신참 경찰에게로 전수되었는데, 신참 경찰은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입기술들을 해석했다. 가정문제 신고전화에 대한 소도시 경찰의 반응을 조사한 한연구에 따르면 경찰들의 지배적인 반응은 혐오, 좌절 그리고 분노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른 어떤 신고전화보다도 가족갈등 전화에 반응하는 것을 싫어했다. 경찰은 가족갈등이 위험하고 따라서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문제는 법적인 개입영역의 밖에있는 사적인 문제로서 경찰이 개입할 적절한 역할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가정문제 신고전화에 대해 아무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을 경찰들이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경찰들의 주요 반응은 최소한의 접촉에 그치고 있었다.

경찰 개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가정문제에 개입하는 경찰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아내가 체포영장에 서명하기를 꺼린다면, 남편이 체포되었을 때 아내가 끝까지 남편처벌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리라는 판단에서 경찰이 체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를 체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찰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체포하는데 참고하는 상황적인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해자가 체포를 원하느냐'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이 이전에 가정문제 당사자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경찰에 대한 가해자의 적대적 태도 여부, 가해자의 음주여부 등이었다.

전통적인 반응은 '경찰의 재량(discretion)'으로 특징 지워진다. 재량으로 인해 경찰은 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그들의 반응을 결정한다. 신념, 개인적 경험 그리고 상황적 요소들이 가정문제에 개입하는 경찰의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었다.

## c. 비판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운동(the battered women's movement)은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고통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것이 1970년대 말에 가정폭력을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high priority social issue)로 부각시켰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가정문제에 대한 경찰의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자들의 확신이 재강화되었다.

구타당하는 아내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반응의 비효과성이 조명되었다.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위한 일시대피소에 거주하는 84명의 아내들에 대한 면접결과, 남편에 의한 구타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거의 남편을 체포하지 않았고, 그들을 다른 원조기관으로 의뢰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찰은 구타당하는 아내들이 도움을 호소한 여러 기관들 중에서 제일 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희생자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도, 그리고 "외상정도로 보아 경찰개입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에조차도" 경찰이 개입하기를 꺼려했다고 말하였다.

197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분쟁은 경찰사망과 부상에 있어서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결과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의 안전조치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이 더욱더 가정문제에 대한 무개입주의 철학을 강화시켰다.

## 2) 서비스 관점

1970년대에 구타당하는 아내문제를 연구한 사람들과 사회운동가들은 가족 갈등시 경찰의 책임성을 요구하였다. 비판자들은 경찰서에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조직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을 훈련시키는 시설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비판에 대응했다. 이러한 접근에 담긴 철학은 훈련 받은 법률집행공무원(경찰)들이 폭력적인 가정문제상황에서 중재하는(mediating) 실천가(practitioner)로서 활동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실천가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가정문제 관련당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개입기술과 기법을 개발했다. 이 접근은 1970년대에 태동하여 1980년대까지 지

속되었다.

#### a. 조사연구

가정문제 신고전화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훈련시킨다는 아이디어는 1970년대 초반 바드(Morton Bard)에 의해 보급되었다. 바드는 가정의 위기상황에 반응할 때 경찰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과 통찰력을 경찰관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는 고무적인 것이었으며, 미국에서 경찰훈련프로그램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졌다.

경찰서에서 시행된 초기의 훈련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1. 경찰관의 안전
2. 사회복지기관과 경찰과의 관계 증진
3. 가정문제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4. 가족위기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역할에 대한 경찰자신들의 태도개선

경찰관들이 받은 훈련의 양과 형태는 각각의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을 처리하는데 동원한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였다. 바드는 가족위기상황에 개입하는 경찰에 대한 훈련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1. Generalist - 모든 순찰경찰관들이 가정위기에 개입하는 훈련을 받음
2. Specialist - 소수의 선발된 경찰관들만이 가정문제 신고전화에만 반응하도록 교육받음
3. Generalist-Specialist - 소수의 경찰관들에게 주로 가정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훈련하되, 그들도 다른 업무를 맡음

바드는 Generalist-Specialist 모델을 자신의 시범사업에서 채택했다. 그러나 Generalist 모델이 미국 전역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경찰서에서 실시한 훈련은 가정문제에 대한 경찰관들의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서에서 받은 훈련이 가정문제를 다루는 경찰관들의 반응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서비스 접근을 강조하는 경찰서에서는 가사분쟁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훈련시켰고, 전통적인 법률집행 접근을 강조하는 경찰서에서는 훈련에 소극적이었으며 가정문

제에 대한 무개입을 선호하거나 또는 체포를 장려하였다.

#### b. 정책집행

1969년에 바드에 의해 개발된 훈련모델은 가족분쟁을 다루는 실질적인 기법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관계에 내포된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경찰관들에게 제공하였다. 바드의 시범사업은 상호연관된 5분야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1)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 2)대인갈등관리(interpersonal conflict management), 3)가족의 구조와 역동성 이론(theory on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family), 4)개입방법(intervention methods), 5)타기관 의뢰 연락망(referral networks)이다. 18명의 경찰관들이 뉴욕시립대학(City College of New York)에서 훈련을 받고 둘씩 짝을지어 그들의 근무시간에 모든 가족분쟁 신고전화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았다. 22개월 동안 그들은 962가정에 대해 1,388회의 개입을 실시하였다.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경찰관 할구역내에서 가족폭행사건의 수가 감소했음을 밝히고 있다. 바드는 가족들이 경찰관들의 개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로부터 바드는 경찰이 가족갈등 신고전화에 반응함에 있어서 그들의 재량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바드는 획일적인 대안들, 예를들어 가정폭력시 의무체포(mandatory arrest)와 같은 방법은 가정폭력과 같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너무 단순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전문적 개입기술을 훈련받은 경찰관들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뿐 만 아니라, 관련된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개입대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개발된 훈련프로그램들은 바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루어졌다. 어떤 경찰서에서는 바드 모델을 창조적으로 변용 하여 경찰관과 사회사업가와의 협조를 강조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일리노이즈(Illinois)에서의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사업가가 경찰서내에 위치하면서 경찰에 의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족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였다(Treger,1975). 플로리다의 Ft. Lauderdale에서는 사회사업가들이 경찰관들과 팀을 이루어 현장에서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펜실바니아의 Erie에서는 사회사업가들이 가정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경찰관들에게 훈련시켰다. 미시간의 Ann Arbor에서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과 경찰사이의 연락조정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훈련프로그램의 형태에 관계없이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의 역동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었다. 아내구타에 대한 그릇된 신화를 타파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과 사회복지기관과 여성 단체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가정문제를 두고 경찰관들이 참여하여 꾸민 역할극이 포함된 위기훈련과정을 통하여 경찰관들은 가정문제 분쟁당사자들의 감정과 동기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피난처(battered women's shelter), 상담소, 가정법원과 같은 지역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경찰관들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존재와 그들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경찰관들로 하여금 매맞는 아내들의 고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태도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 c. 비판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쇠퇴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들이 빈약한데 있었으며, 또한 매맞는 아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비판도 한몫을 하였다.

가정내폭력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벨(Bell)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전화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이 지속되는데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오하이오 주에서 보고된 128,171건의 가정문제 가운데, 41%의 사례에서 희생자가 다치거나 살해되었다. 그러나 가족갈등에서 14%만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벨은 경찰이 정당한 체포에 실패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벨과 같이 비슷한 결론을 얻은 Oppenlander는 경찰이 가정폭력상황에 반응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24개 지역사회에서 훈련된 연구원들을 경찰의 순찰차에 동승시켜, 경찰의 반응을 기록하였는데, 거

기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이 정리되었다.

1. 다른 종류의 분쟁, 예를들어 술집에서의 싸움 등에 비해 가족구성원간의 싸움에 대해 경찰의 반응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찰은 용의자에게 보다 관심이 많았고, 희생자(피해자)의 욕구들에는 덜 관심을 기울였다.
3.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가장 공통적인 전략은 무개입이었다.
4. 중재와 상담기법을 사용한 소수의 경찰관들만이 상담기법을 훈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 90%의 경찰관들이 의뢰기관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4%의 가정문제만이 의뢰되었다.
6. 분쟁당사자들은 경찰관들을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권위자로 생각했고, 경찰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촉진자(facilitators)로 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픈랜더는 서비스관점과 경찰관 훈련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시변통의 심리적인 완화책보다는 체포가 훨씬 더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Wermuth 또한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녀는 바드모델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에서는 가정내 폭력을 형사상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문제로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에따라 경찰의 개입은 당사자들이 동등한 파트너이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폭력에 책임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형사적인 조치가 거의 고려되지 않게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교정체계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신비화한다. "폭력은 약함이나 질병의 한증상이지 권력과 힘의 증상은 아니다" Wermuth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적인 가정문제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저야하며, 여타 폭력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체포 관점

사회운동가들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자행되었을 때에 체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개발함으로써 가정폭력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찰의 재량을 감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에 두 종류의 체포정책이 발전되었다. 권장체포정책(preferred arrest policies)은 어떤 기준에 맞으면 가해자가 체포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의무체포정책(mandatory arrest policies)은 특정 기준이 맞으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정책사이의 차이는 허용된 재량권의 정도에 있다. 의무체포정책은 경찰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체포를 지정하고 있다. 권장체포정책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를 주면서, 체포를 권유하는 것이다.

#### a. 조사연구

가정폭력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으로서 체포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배경에는 미네아폴리스 경찰시범사업(Minneapolis Police Project)이 있다. 셔먼과 버크(Sherman and Berk)는 가사분쟁과 관련된 경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경찰관들에게 3가지 선택이 있다는 가정을 내어놓았다.

1. 단시간 내에 진정시키기 위해 강제로 떼어놓는다
2. 분쟁의 근본원인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재
3.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체포

가정문제에 반응할 때 경찰관들에 이 세가지 선택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사용하는 실험계획을 고안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신고전화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경찰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경찰개입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면담하였다. 연구결과 체포가 별거나 중재에 비해 상습범행을 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와 출판이후, 연구자들은 셔먼과 버크의 결론을 비판하였다. 그 비판의 내용은 연구방법과 통계분석의 타당도에 관한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례없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경찰서에서 체포정책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체포정책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여권운동의 영향도 있었다. 여권운동단체들은 구타당한 아내들이 겪어야 했던 조건들에 대해 대중의 각성을 환기시켰다. 여권운동의 발전에 따라 경찰서를 상대로한 유명한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이들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체포하

지 않음으로써 구타당한 아내들의 정당한 재판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주에서 가정폭력상황에서 체포를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경찰서에서도 체포지침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 b. 정책집행

1988년까지 10개의 주에서 가정폭력상황에 반응하는 경찰관들의 지침으로 의무체포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는 Washington주의 법률이 효시이다. 이 법률이 통과된후 6개월간 시애틀에서는 체포건수가 520% 증가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다른 경찰서에서도 보고되었다. 전국적으로 1980년대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남성들이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았다.

#### c. 비판

체포정책은 "아내학대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배우자 학대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사회 전반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문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1. 대다수의 가정문제는 경찰이 체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담고 있지 않다.
2. 대다수의 주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학대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이 체포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3. 체포정책은 1980년대 단 한가지 시범사업, 즉 미네아폴리스 연구에 의해서만 추진되었다. 다른 도시에서의 반복실험결과 체포가 재범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체포행위는 지역사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체포란 한시간 동안의 구금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말동안의 구류를 의미할 수도 있다. 가해자를 얼마동안 구금상태에 처하게 하느냐에 따라 체포의 효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5. 학대행위를 하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여러번 체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체포되기도 한다. 체포는 가해자가 교정제도에 어떤식으로 관여되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6. 학대행위는 미국의 가치관과 태도들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전사회적(societal)인 문제이다.

#### 4) 1990년대의 경찰의 반응

지난 20여년간의 경찰의 반응은 전체사회의 가치우선순위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가정폭력의 역기능적인 성격은 1970년대의 서비스 관점을 낳았다. 1980년대의 보수주의적 철학은 체포지침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가져왔다. 이 두 관점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의 각성을 가져왔으나, 이들 관점은 아직 충분한 뒷받침이 없는 상태이다.

1990년대의 경찰의 반응은 두가지 관점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가정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경찰의 개입을 바라고 있다. 체포와 서비스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경찰의 반응을 개선했다. 1990년대의 가장 고무적인 전략은 경찰과 지역사회 기관들간의 연락조정노력이다. Steinman은 경찰의 행동이 지역사회의 개입노력들과 조정될 때, 예를들어 분노통제집단모임, 알코올중독자/약물남용자 의뢰기관 등, 체포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법정과 치료기관들이 배우자학대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체포된 적이 있는 범죄자에게 사후서비스(follow up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경찰의 행동이 재강화된다고 본다.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함으로써 1990년대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미국사회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 가정폭력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로서 우리사회의 성격과 구조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 2.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의 반응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문제는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고 또 가정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횟수는 많지않다. 우리 나라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무개입의 개입'의 원칙으로 가정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 가. 전주 북부경찰서의 사례

경찰 사회사업가 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전라북도 북부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방문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비행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소년계’를 방문하였다. 소년계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소년법에 따라서 법을 적용한다. 소년계 내의 직원은 4명이며, 이들이 1년간 다루는 사건들은, 예를 들면 ‘94년의 경우 183건, 353명 정도로 많다. 5명 이상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계에 소속되고 또 성에 관련된 범죄도 여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소년범죄는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범죄가 저질러진 상황을 참작하여 법을 적용하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환경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에게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법대로 기계적으로만 적용할 뿐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회기관으로 의뢰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경찰은 수사보고만 하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며, 다만 검사가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최종적인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구속 소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없는데, 이의 원인으로 인력부족과 법적근거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소년계 경찰관들은 자주 치안이나 시국사건 등의 강력사건에 동원되기도 한다는데, 이는 서민들의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의 사회봉사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외부직원을 경찰서 내외에 투입하여 상담 등을 담당하게 하거나 경찰을 훈련시켜 경찰사회사업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경찰 사회사업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실시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정문제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 ‘수사계’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분쟁에 관한 사건들이 고발되었을 때에만 관련법<sup>9)</sup>에 근거하여 처리

9) <배우자 학대, 존/비속 학대에 관련된 법 조항>

#### 1. 형법

제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 257조 (상해, 존속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2만 5천원

한다고 한다. 가끔 폭력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방문한 당일 오전에도 상담 전화가 왔었다고 하였다. 50대의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구타한 사건인데, 전화는 구타당한 아버지의 딸이 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고발하더라도 금방 화해를 하거나 취소하게 되어 바로 풀려날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가족간에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해나 대화로 해결을 하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북부 경찰서에는 이런 상담전화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 파출소에는 비교적 있는 편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상담문의가 있더라도 이를 기록하는 업무일지 같은 것은 없다고 한다. 경찰 측에서는 자료를 남기지 않고 모두 검찰로 보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분쟁에 관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었다. 경찰청에서 분석한 통계자료가 있었으나 세분화되지 않아서 유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비속폭행이나 배우자 학대 등에 관한 범주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 통계자료가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수사계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상담실을 가 보았다. 민원실내에 여성상담의 전화를 두고 운영하고 있었으나, 민원처리를 하느라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前 項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前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59조 (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60조 (폭행, 존속 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前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전 2항의 죄는 피해자의 明示한 의사에 反하여 論할 수 없다.

제 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 257조, 제 258조, 제 260조 또는 제 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었다. 상담전화는 자주 걸려오지는 않지만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상담내용의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들을 수 있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케비넷으로 막혀 있어 방문상담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여성상담실 전용 전화가 있으나 현재 형사계와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도 상담실에서 받기보다는 주로 형사계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 경찰서에는 거의 상담전화는 걸려오지 않으며, 기록서에는 5건이 적혀있었는데,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이나 이리경찰서에서는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경찰청에는 전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당여경은 전해주었다.

전라북도 북부 경찰서를 방문해 본 결과, 우리 나라에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경찰서도 북부 경찰서와 거의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970년대 중반이전의 제 1단계인 전통적인 반응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V.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에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도입·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 가정폭력과 청소년 비행, 그리고 이웃간 분쟁 등과 같은 비교적 부드러운(soft) 사건들에 대해 경찰조직 내에 전문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각종 ‘패륜범죄’와 여성에 대한 학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도입필요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제도운영의 토대와 환경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21세기 한국사회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또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단계적인 도입·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도입·활용할 만한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었느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여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웃간 분쟁 등 현실의 문제들이 경찰사회사업가 제도 도입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역할, 즉 시민의 고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정내 폭력과 관련하여 신고전화의 빈번히 걸려오고 있다는 현실로부터 안락한 생활 보호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찰조직 내에서도 ‘봉사하는 경찰상’에 관한 관심이 높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다소 성숙해가고 있다는 점

이다. 과거 시국사건에 큰 비중을 두어왔던 경찰조직으로서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시국사건의 감소에 따라,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역할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경찰사회사업은 경찰위상 재정립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환영받는 레파토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시행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여건들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는 ‘가정문제에 타인의 간섭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이다.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로서 가정은 나름의 결속력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결속력과 질서는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관념이 시민들 뿐 아니라 경찰조직, 그리고 경찰개인들에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가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으로 요약되는 경찰사회사업가 제도가 시민일반·경찰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리라는 판단은 바로 이와같은 전통적인 가족이념에 근거하고있다.

둘째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경찰조직의 보수성과 관련된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나름의 관성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할 때, 경찰사회사업가제도와 같은 새로운 경찰업무는 경찰조직에 긴장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경찰업무의 우선순위에서 시국사건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사건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또는 경찰사회사업과 같은 대민봉사 업무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등은 인력과 예산과 기구개편에서 경찰조직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세째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활용에 부정적인 여건은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서,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 인력체계, 사회자원체계의 미비문제이다. 실상 경찰사회사업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들이 개정되지 않는거나 또는 법개정이 지연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문사회사업가를 경찰사회사업가로 채용하는 문제, 현직 경찰들에게 경찰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과 역동성을 교육·훈련하

는 문제, 경찰사회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광범위한 사회자원(각종 상담소, 가정문제치료소 등)의 부재문제 등이 경찰사회사업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이와 같은 부정적 여건은 그러나 단계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여건으로 간주한 전통적인 가족관은 사회변화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고, 변화를 꺼려하는 경찰의 보수성도 시민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내학대문제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지닌 여성운동단체들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추세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단계에서는 가정문제에 경찰이 개입을 주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인력체계, 사회자원체계 등은 위의 두 여건들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전문사회사업의 발전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며, 그만큼 경찰조직에서 주도권을 갖고 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사회에서의 요구가 제기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입전략(경찰사회사업가)을 마련하고, 법적 체계에 대비한 정책을 입안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력양성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여건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입안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찰사회사업의 위상과 법적 체계, 인력훈련,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구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 1. 경찰사회사업의 위상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경찰조직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위상을 점할 수는 없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경찰의 전통적인 역할인 치안유지, 질서유지를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위상으로부터 점차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대략 3단계로 나누어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위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 가. 시범사업단계 (1996년 - 2000년)

앞으로 몇년동안 경찰사회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사회 유형별로 1-2곳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소규모의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s)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사회사업가제도에 관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될 것이며, 소수의 경찰사회사업가가 특별채용형태로 충원되어 한정된 시간과 업무영역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가제도에 대한 경찰조직의 지원은 미미할 것이며, 따라서 그 성과도 미약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시범사업의 성과는 이후의 단계로 이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가의 역할은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청소년 비행사건, 이웃간 분쟁사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지역사회기관에로의 의뢰서비스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에 대한 일반 경찰들의 이해와 협조는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일부 경찰들은 경찰사회사업가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그것이 경찰본연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일반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사회사업의 가치와 역할을 인지시키는 것이 이후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 나. 전국적 확산단계 (2000년 - 2010년)

시범사업의 결과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시행이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경찰조직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 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경찰이 제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사회의 반응이 제기되면,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에서의 경험을 반영하여 전국적인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반 경찰들도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를 불식하고, 협조와 공감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내에서 전문사회사업가들이 관여하는 다종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이들 사회기관들과 경찰조직과의 상호협조가 경찰사회사업가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다.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안정단계 (2010년 이후)

21세기 전반에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경찰조직의 자연스런 역할목록에 포함되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관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경찰사회사업가제도가 시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유용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대학에 경찰사회사업학과(경찰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지고, 많은 경찰관 지망생들이 사회사업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입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법적 체계

경찰사회사업가 제도는 법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될 수 없다. 시범사업단계에서부터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특히 조직, 인력충원, 역할과 기능, 책임한계 등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와 관련된 법령들에는 한국 가족의 독특한 특성들—예를 들어 강한 혈연관념, 상존하고 있는 효사상, 친족부양과 친족책임의 원리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형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가정폭력과 청소년비행, 그리고 이웃간 분쟁에 관한 법령들의 해당 조문들이 개정되거나,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통해 가정문제와 같은 문제영역에 경찰과 경찰사회사업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극히 좁다.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와 관련된 법은 미국의 경우에는 주법에 의해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어야 한다.

전국적인 확산단계에서는 경찰사회사업가제도 관련 법령들이 세밀하게 입안되어야 한다. 특히 본법 이외에도 시행령에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안정적 운영단계에서는 제도자체의 관성에 따라 필요시 법령들의 개정 및 제정이 뒤따르게 된다.

### 3.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찰사회사업가제도의 성공여부는 인력의 활용에 달려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용이 요청된다. 시범사업단계에서의 인력의 충원은 기왕에 배출된 전문사회사업가(석사 및 학사)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경찰사회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경찰의 조직특성과 역할, 경찰사회사업의 발전과정과 역할,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문제 상담과 가족치료, 가족면접,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동원 등 실무에서 당장 필요한 기초지식들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경찰대학,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인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실상 사회사업에 관한 지식이 적고, 사회사업가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에게 전문사회사업 전체를 교육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은 사회사업의 이해, 가정폭력의 이해, 지역사회 자원의 이해등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경찰사회사업의 전국적 확산단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일부대학에 경찰사회사업학과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교육은 대학에서 주관하고, 실무교육은 경찰대학에서 주관할 수 있다.

일반 대학에 경찰사회사업학과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경찰대학에서 전공을 분리하여 경찰사회사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찰대학내에 별

도의 전문과정이 신설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느 경우이든 모든 경찰대학생들과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경찰관들에게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에 관한 교육훈련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 4. 시범사업의 계획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기초로 향후 5년 정도의 기간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구상해보자. 미국 시카고의 사회서비스계획(SSP)과 디트로이트의 가정문제상담소(FTC)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 가. 대상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3개 지역을 선정한다. 대도시형으로는 서울경찰청 산하 1개 경찰서를 선정하고, 중소도시형으로는 서울을 제외한 여타 경찰서 가운데 관할인구규모가 20만명 정도인 중소도시를 선정하며, 농어촌형으로는 군단위 경찰서 1곳을 선정한다. 어느 경우에나 경찰서와 인근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와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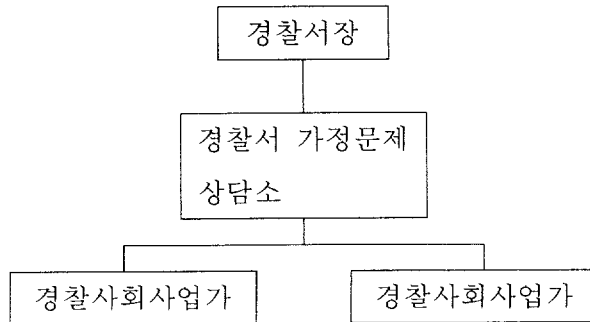
일단 경찰사회사업가제도 시범사업 경찰서로 선정된 경찰서에서는 시범사업 시행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웃간 분쟁 등에 관한 신고전화와 조치사항을 통계로 작성하여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들 문제들의 예방·해결효과측정을 위한 기초선 자료를 집적하기 시작한다. 이들 자료들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 나. 조직구조

시범사업단계에서 경찰사회사업가들은 경찰서와 인접한 별도의 건물에서 경찰

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서내에 경찰사회사업 부서를 두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경찰에 대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사회사업부서의 명칭은 가칭 ‘00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 (Family Trouble Counselling Office at oo Police Department)’로 한다.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조직구조

#### 다. 인력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에는 선임경찰사회사업가 1인과 경찰사회사업가 2인 및 사무원 1인을 둔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위해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를 충원한다. 선임경찰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학 석사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교정복지, 아동복지, 상담,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충원하며, 그는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아울러 선임경찰사회사업가는 가족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사회사업가,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지도감독(supervision)을 제공한다. 경찰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학 학사 이상인 학력을 지닌 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된 자이며, 그는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례들에 대해 전화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락조정 등의 임무를 맡는다. 경찰사회사업가는 업무에 있어서 선임경찰사회사업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기

관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학사이상의 사회사업가들로서 이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고, 야간근무에 임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 일반 시민들 가운데 선발하며,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뒤 무보수로 야간근무를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훈련은 경찰대학과 인근대학의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에서 나누어 맡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의 인력 교육

교육내용	선임경찰사회사업가	경찰사회사업가(시간제 고용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비고 (교육담당기관)
경찰조직의 이해	4시간	4시간(2시간)	경찰대학
경찰사회사업의 이해	16시간	16시간(8시간)	경찰대학
가정폭력의 이해	8시간	8시간(4시간)	인근대학
상담기술 및 실습		16시간(8시간)	인근대학
지역사회자원의 이해		4시간(4시간)	인근대학

이들의 지위(신분)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다음과 같다. 선임경찰사회사업가와 경찰사회사업가는 시범사업을 위해 경찰로 특별채용되며, 각각의 지위는 경감(선임사회사업가), 경위(경찰사회사업가)로 한다. 시간제 고용 사회사업가의 지위는 경위에 준하나 그는 정식 경찰사회사업가는 아니다.

#### 라. 업무

경찰사회사업가의 업무는 미국 SSP와 FTC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화상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웃간 분쟁 사건들 가운데 경찰관이 의뢰한 사건들에 대해 전화로 상담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전화상담의 태세를 갖추

는데, 근무시간(09:00부터 18:00, 또는 17:00까지)에는 이들이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퇴근 후에는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가정폭력이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는 일과시간외 나머지 시간을 모두 담당한다. 이들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들은 경찰사회사업가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임무에 투입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례에 있어서는 선임경찰사회사업가, 경찰사회사업가에게 의뢰한다. 선임경찰사회사업가와 경찰사회사업가는 야간에 필요시 자택에서 전화상담을 하며, 이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받는다.

## 2) 현장출동 및 가정방문

경찰사회사업가는 사건현장에 경찰관과 동행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들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필요시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 3) 자발적인 서비스 대상자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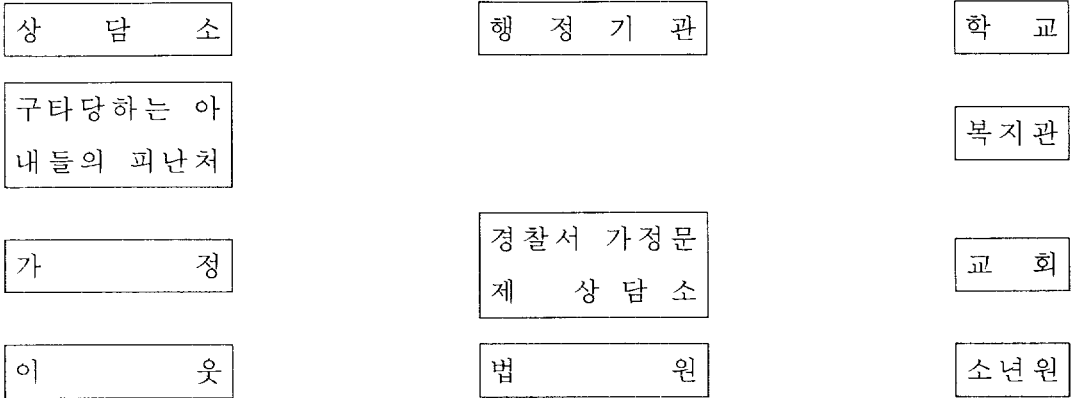
자기 스스로 가정문제상담소를 찾아오는 자발적인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마련된 면접실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지역사회자원 활용

경찰사회사업가들은 종종 서비스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하거나, 이들 서비스 기관에 의뢰한다. 예를들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생활보호서비스 대상자로 특정 대상자를 책정하도록 의뢰한다든가, 모자원에 가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학대받는 아내들의 피난처와 같은 일시보호서비스 시설에 대한 안내나 의뢰,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여성의 전화라든가 가정법률상담소, 생명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유지들로부터 답지된 성금과 후원금을 극빈대상자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에서 유기적인 연락조정을 하는 지역사회자원으로는 다

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림 3〉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와 연락조정하는 지역사회자원

#### 5) 사후지도서비스(follow-up services)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일단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지속적으로 전화상담, 가정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상황의 진전을 파악하고, 필요시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6) 기록관리와 평가

경찰사회사업가들이 수행한 모든 활동은 이후의 평가를 위해 철저히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들의 수사자료로 이 기록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이들 기록은 경찰사회사업가들이 서비스 대상자들을 원조하기 위한 서비스전략모색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또한 그런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것이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경찰관들은 이 기록을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생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선임경찰사회사업가가 해야할 일이다.

## VI. 결 론

요즘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배우자 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의 가정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웃간의 분쟁이나 청소년 문제들도 자주 일어나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어느 누구의 개입도 허용치 않아 이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경찰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모색해보았다.

가정폭력은 모든 나라, 시대, 민족, 수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성인 여성은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게보다 가장 안심할 수 있었던 장소인 가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 의해 구타, 살인,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붕괴시킨다. 학대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 자체가 커다란 손상이며, 어머니가 학대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안정감을 상실하고 퇴행적으로 되기도 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학습되는 것으로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폭력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경찰사회사업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가정폭력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점차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되자 전통적이고 보수적으로 반응해 오던 경찰에게 변화가 요구되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을 훈련시키는 시설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였다. 사회사업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시범사업들이 계획되어 실행, 제도화되었으며 경찰들은 보다 적절히 가정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경찰의 반응은 전체 사회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1990년대의 반응은 지난 20여년간의 관점인 서비스와 체포 관점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가장 고무적인 전략은 경찰과 지역사회기관들 간의 연락조정노력이다.

미국에서 발달한 경찰사회사업제도 중 대표적인 사례는 시카고 근처의 도시에서 실시된 SSP와 디트로이트의 가정문제상담소(The Family Trouble Clinic)가 있다. 24시간 위기 개입과 전화 상담, 경찰과 사회사업가의 훌륭한 협동작업으로 이 사례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아직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반응으로써, 점차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우리 나라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나 이웃간의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찰사회사업가제도는 시범사업단계, 전국적 확산단계, 경찰사회사업가 제도의 안정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약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예상되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에서 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대상자들이 경찰에 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서내에 경찰사회사업 부서를 두지 않고 경찰서와 인접한 별도의 건물에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서 가정문제상담소에는 선임경찰사회사업가 1인, 경찰사회업가 2인 및 사무원 1인을 둔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위해 시간제고용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를 충원한다. 이들은 전화상담, 현장 출동 및 가정방문,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후지도 서비스 그리고 기록관리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참고문헌

- 전주여성의 전화 내부 자료, 1995.
- 조옥영,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책”, 1994,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전주지부.
- 치안연구소, 치안시책자료 제 2호, 1994.
- 치안연구소, ‘21세기 경찰발전 방안’, 1994년도 제1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 자료, 199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우리가정 어디까지 왔나?’,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전주지부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 1994.
-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9.
- Alan Buorlet, *Police Intervention in Marital Violen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0.
- Armando Morales, Bradford W. Sheafor, *Social Work A Profession of Many Faces*, Hlyn and Bacon, Inc. 1980.
- Bae, R.P. 1981. Ineffective crisis intervention techniques : The case of the police,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4:61-82.
- Berk, R.A. and Newton, P.J. 1985. Does arrest really deter wife battery? : An effort to replicate the finding of the Minneapolis spouse abuse experi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Buchanan, D.R. and Chasnoff, P. 1986. Family intervention programs : What work and what doesn't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3:561-572.
- Burris, C.A. and Jaffe, P. 1983. Wife abuse as a crime : The impact of police laying charge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25.
- David L. Carter, The late Louis A. Radelet, *The Police and Community*,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94.

Dobash, R.E. and Dobash, R. 1979. *Violence against wives : A case against patriarchy*. New York : The Free Press.

Dunford, F.W. , Huizington, D.E. and Elliott, D.S. 1989. *The Omaha domestic violence police experiment*.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 New York. 1987.

Family Service of Detroit and Wayne County, Family Trouble Clinic, February, 1987.

Garmache, D.J. , Edleson, J.L., and Shock, M.D. 1988. Coordinated police, judicial and social service response to woman battering : A multi-baseline evaluation across three communities, in Hotaling, Finkelhol, University of New Hampshire.

Gelles, R.J. 1980. Violence in the famil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43-155.

G. Lewis Penner, "An Experiment in Police and Social Agency Cooper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ervice*, 322 : 79-88.

Harvey Treger et al., *The police-social work team : a new model for inter-professional cooperation*,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5.

Hendricks, J.E. 1985. *Crisis intervention*.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Higgins, J.1978. *Social services for abused wives*. Social casework.

Hirschel, J.D. and Hutchison, I.W. 1987. *Experimental Research on police response to spouse assault*.

Hyde, J.S. and Rosenberg, B.G. 1980. *Half the human experience*. Lexington , KY : Heath.

James E. Hendricks, *Crisis intervention in criminal justice/social service*, Springfield, Ill. : C.C. Thomas, 1991.

James Kenyon, "Police Release Profile of 1974 Murder Victims", The Detroit

News, October, 7, 1974.

Liebman, D.A. and Schwartz, J.A. 1972. Police programs in domestic crisis intervention : A review, in Snibble and Snibble, The urban policeman in transition.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Oppenlander, N. 1982. Coping or copping out. Criminology.

Martin, D. 1976. Battered wives. New York : Pocket Books.

Pagelow, M.D. 1985. Family violence. New York : Praeger.

Pahl, J. 1982. Police response to battered woman. Journal of Social Welfare Law.

Peter M. Barclay et al., "Social Workers Their roles & tasks", Bedford Square Press, 1985.

Robert D. Finney, "A Police View of Social Workers", Police, February, 1972.

Robert H. Langworthy, Lawrence F. Travis III, Policing in America, Macmillan Publishing Co., 1994.

Sherman, L.W. and Berk, R.A. 1984.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Walker, Edna Todd, Family Trouble Clinic : a police--social work approach to family violence, Family Service of Detroit & Wanyne County, 1979

Walker, L.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 Harper and Row.

Wermuth, L. 1982. Domestic violence reforms : Policing the private?,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연구보고서 95-17

警察社會事業家制度 도입·활용방안

---

1995年 12月 日 印刷  
1995年 12月 日 發行

發行 金 本 植  
編輯 治安 研究所  
印刷 大韓 文化 社

---

---

